

발 간 등 루 번 호

11-1431000-100010-1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 공 저 작 물 자 유 이 용 허 락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 책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 · 등록 · 활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01

지식재산권의 이해

제1절 지식재산권 개요

- | | |
|--------------------------|---|
|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4 |
| 2.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 8 |

제2절 지식재산권 기초 다지기

- | | |
|---------------------|----|
|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 14 |
| 2.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17 |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제1절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 | | |
|---------------------|----|
| 1. 선행기술 정보란? | 28 |
| 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 29 |
| 3. 지식재산정보 보급·활용 안내 | 31 |

제2절 출원 따라하기

- | | |
|---------------------------|----|
| 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 34 |
| 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 38 |
| 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 40 |
| 4. 분할·분리·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 41 |
| 5.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 | 46 |
| 6. 출원 관련 문의 | 66 |

제3절 심사 알아보기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68
2.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73
3. 디자인 심사 절차 및 제도	78
4. 맞춤형 심사제도	82

제4절 등록 신청하기

1. 지식재산권 등록이란?	90
2. 기본 등록 신청	91
3. 변동 등록 신청	96
4. 등록 보정 제도	100
5. 등록 관련 문의	102

제5절 심판절차 밟기

1. 특허심판이란?	106
2. 특허심판의 종류	107
3. 특허심판 이용안내	109
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113
5.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114

제6절 수수료 납부하기

1. 수수료 일람표	116
2.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119
3.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122
4.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123
5.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124
6. PCT 국제출원 수수료	125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126
8. 해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27
9.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	129
10.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35
11.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36
12. 지식재산포인트 제도	138



03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제1절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 | | |
|---------------------------|-----|
| 1.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 144 |
| 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145 |
| 3. 공익변리사 운영 | 147 |

제2절 지식재산 지원 시책

- | | |
|-------------------|-----|
| 1.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조회 | 150 |
| 2. 지식재산처 세부사업 요약표 | 151 |
| 3. 지식재산처 제도 및 법령 | 158 |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 | | |
|---------------|-----|
| 1. 출원 및 심사 절차 | 160 |
| 2. 국제출원 절차 | 162 |
| 3. 등록 절차 | 164 |
| 4. 심판 절차 | 167 |
| 5. 전자출원 절차 | 170 |

제4절 기타 서비스별 유용한 정보

- | | |
|---|-----|
| 1. 특허로(www.patent.go.kr) 이용 방법 | 174 |
| 2. 통합서식작성기(PKEAPS)에서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 179 |
| 3. 키프리스(www.kipris.or.kr) 이용 방법 | 182 |



04

불 입

- | | |
|--------------------------|-----|
|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 184 |
| 2. 지식재산처 지원 기관 현황 | 198 |
| 3.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 200 |
| 4. 주요 국가 지식재산관청 인터넷 주소 | 201 |
|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 202 |
|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 204 |
| 7.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 2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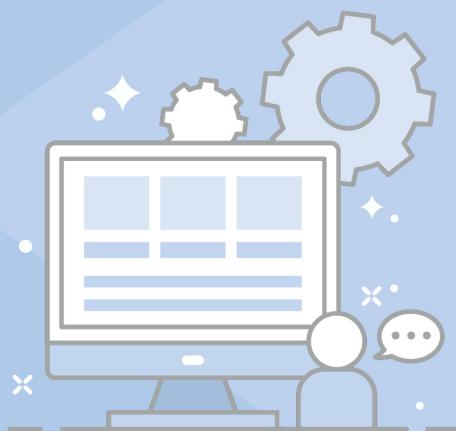
PART

01

지식재산권의 이해

제1절 지식재산권 개요 3

제2절 지식재산권 기초 다지기 13



PART

01

지식재산권의 이해



제1절 ...

지식재산권 개요

- | | |
|--------------------------|---|
|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4 |
| 2.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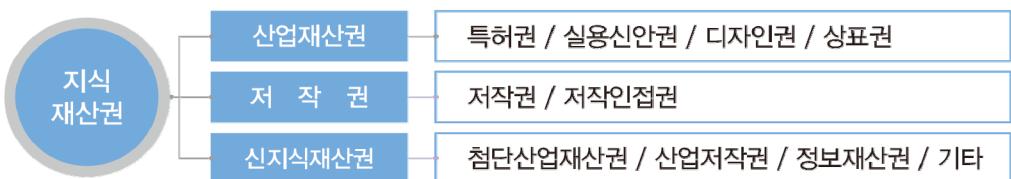
1

지식재산권 개요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①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자신의 발명 및 개별기술을 적시에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①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사례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사가 전화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 속 기 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구부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특 허 원천, 핵심기술	실용신안 생명 주기가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디자인 물품의 외관	상 표 상품의 명칭
엔진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등)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등)



참 고



상표의 구분

구 分	상 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정 의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 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사례			세계 일류 상품	
등록번호	40-0605404-00-00	43-0000285-00-00	47-0000011-00-00	42-0003607-00-00
권리자	씨제이 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협동 조합연합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백제문화재재단

- 출원번호 예시 40-2016-0000150

▼ ▼ ▼
 권리 연도 일련번호

- 등록번호 예시 40-0256534-00-00

▼ ▼ ▼ ▼
 권리 일련번호 구분 구분

(!)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구 분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간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할 때부터 70년간 음반의 경우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 신지식재산권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적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의미함



•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설계 / 생명공학 기술
•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 영업비밀 / 뉴미디어
• 기타	프랜차이징 / 캐릭터



2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가. 선출원주의

- ①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② 시기적 기준(日기준)

- 다른 일자 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일자 출원 :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특허법 제36조제2항)

③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

나. 제출 서류의 효력 발생 시기

지식재산처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음

① 원칙 : 도달주의 (특허법 제28조 제1항)

-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서류는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② 예외 : 발신주의 (특허법 제28조 제2항)

- 도달주의에 의할 경우 지식재산처와 당사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특허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따르고 있음. 즉,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식재산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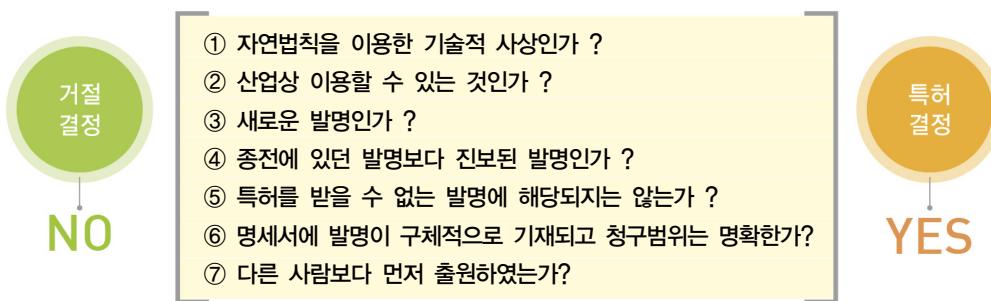
도달한 것으로 보며,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

그러나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발신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에 실제로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다. 속지주의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라. 특허 결정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등)(특허법 제32조)

1)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특허 요건 중 하나로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

②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출원 시(시·분·초)

- 지역
 - 공지 및 공연 실시 : 국제주의(2006. 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③ 신규성 위반 사유

종래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④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

-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대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해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

2006. 3. 2. 이전 출원	2006. 3. 3. 이후 출원
공지예외 대상을 1) 발명의 시험 2) 간행물에의 발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4)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5)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 요건(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 공지일로부터 12개월(12. 3. 15. 이후 출원. 단, '12. 3. 14. 이전 출원은 6개월) 이내 출원
 -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
 - 출원 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기간 또는 설정등록 이전의 기간에 공지예외 주장을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15. 7. 29.부터 시행)

2) 진보성

① 진보성이란?

- 특허 요건 중 하나로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

②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③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의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나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영구기관 등)

PART

01

지식재산권의 이해



제2절 ...

지식재산권 기초 다지기

- | | |
|---------------------|----|
|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 14 |
| 2.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17 |



1

지식재산권 기초 다이어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가. 포괄위임등록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함
* 특허로>오른쪽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
- ②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 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나. 직무발명

- ①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함
- ②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다. 이용발명

- ① 의의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②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만 후등록 특허(A+a)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컴퓨터 S/W 보호

1)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① 저작권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②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 방지에 효과적이거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 기술은 보호 불가능

2)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①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야 함)
- ② 특허에 의한 보호는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3) 영업방법(BM : Business Method) 관련 발명

- ①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함

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1) 정의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2) 보호법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3) 권리의 발생 및 효력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설정 등록함
 - ① 배치설계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에 위배되거나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에 권리의 등록이 취소됨
 - ②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함

바.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①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임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된 발명(고안)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행사 가능

2) 특허권(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①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②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 특허권 등 침해죄는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사. 저촉관계

1) 관련 법령

-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인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음

2) 저촉관계의 유형

① 특허권과 디자인권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객체가 상이하여 선원주의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호 권리 간에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선출원 디자인권의 창작의 대상이 일정한 형상, 모양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와 후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구성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 양자는 상호 저촉관계에 해당함

② 특허권과 상표권

물품자체의 형상을 표시하는 입체상표가 상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물품의 형상에 관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특허권과 상표권의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2

지식재산권 기초 다자기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 확대 추진(2025.2월)

1) 도입배경

-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분야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특허권 확보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지속적으로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운영하여 첨단기술산업분야의 신속한 권리획득 지원(25년 11월 연장공고)
- ②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이 우선심사 분야로 지정 공고(25년 2월 시행, '25년 11월 연장공고)

나. 초고속심사 도입(2025.10)

1) 도입배경

- 수출기업이 신속히 국내 특허를 확보하여 수출전략 수립 및 해외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우선심사보다도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2) 주요내용

- ① (초고속심사 대상)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기초출원 우선심사(각각 연간 2,000건씩 지원 예정)
- ② (신청방법)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을 제출하면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를 작성(초고속심사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신청
- ③ (심사 처리기간) 착수기간 1개월, 중간서류 처리기한 1개월

다. 의견서제출기간 연장(2025.7)

1) 도입배경

- 출원인이 의견서제출기간 내 검토·대응이 어려운 경우 1개월 단위로 기간연장을 신청
→ 절차적·금전적 부담 발생

2) 주요내용

- 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기간 연장(2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라. 분할출원의 특허여부결정보류·심사유예 허용(2025.7)

1) 도입배경

- 분할출원의 심사순위를 변경(원출원의 심사청구일 →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일)하도록 특별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분할출원에 대한 특허결정보류 및 심사유예를 제한하는 규정은 남아 있어, 늦은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요구는 여전히 미충족

2) 주요내용

- 특허여부결정보류 및 심사유예 제외 대상에서 ‘분할출원’ 삭제*

* 분할출원한 날과 관계없이, '25.7.11. 이후부터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여부결정보류 및 심사유예 신청 가능

마. 포괄위임사항에 출원인의 지식재산포인트 조회 및 사용 추가(2025.7)

1) 도입배경

- 「신용정보법」에 따라 출원인의 신용정보를 대리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괄위임 등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 현재 대리인이 별도의 위임없이 출원인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조회 및 사용 중 → 출원인과 대리인 또는 지식재산처간 분쟁발생의 우려

2) 주요내용

- 포괄위임장의 위임사항에 ‘지식재산포인트의 조회 및 사용’ 추가

바. 디자인 창작자 정정제도 개선 (2025.2)

1) 도입배경

- 디자인 창작자 정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진정한 창작자가 아닌 자를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막고 창작자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창작자의 혁신의욕 고취를 위해 진정한 창작자가 기재되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주요내용(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

- ①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음

* 창작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외국인의 경우 음역상의 차이 등

※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결정 때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발명자 정정 가능

- ② (증명서류 요구)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

* 예) (정정 전) 창작자 장영실, 홍대용 → (정정 후) 발명자 장영실, 지석영

☞ [확인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홍대용, 지석영의 서명/날인이 필요

※ 설정등록 이후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

* 예) (정정 전) 창작자 장영실, 홍대용 → (정정 후) 발명자 장영실, 지석영

☞ [확인서류] 디자인등록권자 및 장영실, 홍대용, 지석영의 서명/날인이 필요

사. 디자인 이의신청 기간 확대 (2025.11)

1) 도입배경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

* (일부심사)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

2) 주요내용

-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기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3개월	(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3개월 (기존) +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심사 강화(2025.11)

1) 도입배경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관련 부실권리 발생, 권리남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 (일부심사)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

일부심사 디자인권 권리남용 사례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일부심사 디자인권으로 등록 → 경고장 발송 → 판매 중지 → 등록 무효 전까지 독점판매 → 업체의 대응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기간 동안 유행이 바뀜

2) 주요내용

- 심사관이 도용·모용 등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기간 추가 부여

개선내용	현 행	개 정
일부심사출원 심사강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일부심사 거절이유) 디자인 출원의 신규성·先출원 요건의 '명백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거절 가능 (제62조제5항 신설)

자.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시행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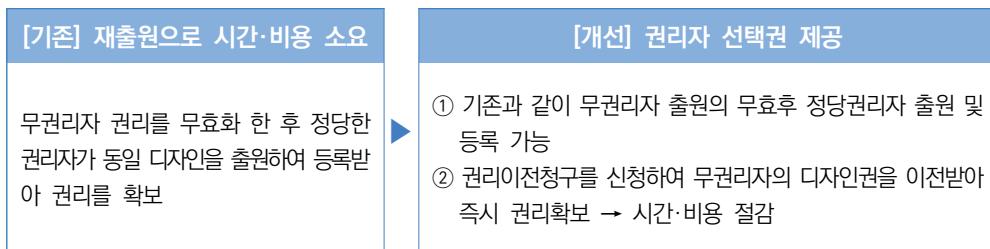
1) 도입배경

- 타인에 의해 도용된 디자인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등록무효심판 제기와 재 출원을 통한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존재
 - * 특허법은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청구제도 마련 및 운영 중('17. 2)

2) 주요내용

-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해당 디자인권을 직접 이전청구하여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반환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2트랙 보호



자. 디자인출원서의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2025.11)

1) 도입배경

- 디자인출원서 기재 사항 중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은 관용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에, 디자인출원서 기재 사항 중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디자인출원을 간소화

*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및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에서도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 없으며, ‘창작 내용의 요점’이 삭제되더라도 ‘디자인 설명’ 란을 통해 창작의 취지 기재가 가능

(현행) 디자인출원서 주요 기재사항

- ①디자인 도면 ②물품류 ③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④디자인의 설명 ⑤창작 내용의 요점 등

2) 주요내용

-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에서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거절 통지를 줄이고, 출원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카. 부분디자인 규제 완화 (2025.11)

1) 도입배경

- 현행 부분디자인의 물품명칭은 전체물품의 명칭만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주요국의 기재요건 대비 엄격하다는 지적
- ‘부분디자인 여부’의 서지사항 기재요건 삭제에 대한 요구

2) 주요내용

- (명칭 기재 완화) 부분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전체 물품의 명칭 또는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을 허용
* (예시) 컵의 손잡이 부분을 등록받고자 할 때 기재 가능한 물품의 명칭 : ‘컵’ 또는 ‘컵의 손잡이’
- (출원서 간소화) 서지사항 중 부분디자인 기재항목을 삭제

타.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조상품 단속 근거 신설 (2025.5)

1) 도입배경

-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2) 주요내용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 외국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타인으로 하여금 국내로 반입하게 하여 국내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조문 신설

파.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2025.7)

1) 도입배경

- 상표는 출원 당시부터 이미 사용 중인 경우가 많으며, 상표 브랜드의 순환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신속한 권리 확보의 중요성 증대

2) 주요내용 (상표법 제57조제3항, 제60조제1항 개정)

-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하. 초고속 상표우선심사제도 도입 (2025.10.15.)

1) 도입배경

- 상표권 조기확보는 수출 계약, 분쟁대응(이의신청 · 무효심판) 등 해외 진출에 핵심적 요소이나 심사가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확보를 지원을 위한 대체적 지원 필요

* 상표심사 지연(24년 평균 1차심사 12.8개월 소요)으로 수출기업 조기 권리확보에 어려움 발생

2) 주요내용 (상표법 제187조 개정)

-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확보 지원을 위한 상표우선심사대상 확대, 입증서류 간소화 및 요건심사 완화, 초고속 우선심사(30일) 도입
 - (우선심사대상 확대)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 (입증서류 간소화) 수출기업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타 기관 발급 서류(한국무역협회, 은행, 중기부 등)도 대체 인정
 - (요건심사 완화) 수출기업의 상표사용 사실 판단시, 지정상품과 유사·견련성 있는 상품까지 확대 인정
 - (처리기한 단축) 수출기업 우선심사 처리기한 45일 → 30일 이내 단축

거. 지식재산공제 대출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2025.4)

1) 도입배경

-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공제의 대출 범위 확대 및 대출 절차 간소화 필요
 - * (지식재산공제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적립한 납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제 대출을 받아 대응하여 비용 리스크를 분산·완화

2) 주요내용

- ① (대출 범위 확대) 기존 '분쟁대응 즉시대출'의 대상은 매월 납입하는 적립형 공제 가입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일시에 납입하는 예탁형 공제 가입기업까지 확대
- ② (대출 절차 간소화) 공제부금을 담보로 하는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대출의 경우, 대출 상담 및 대출액 산정 절차 생략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추진

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2025.7)

1) 도입배경

-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변리사의 상담업무 및 민사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제1호 개정, 동항 제1호의2 신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업무 범위 및 민사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산업체권 분쟁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분쟁까지 확대

PART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제1절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27
제2절	출원 따라하기	33
제3절	심사 알아보기	67
제4절	등록 신청하기	89
제5절	심판절차 밟기	103
제6절	수수료 납부하기	115



PART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제1절 ...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 | | |
|---------------------|----|
| 1. 선행기술 정보란? | 28 |
| 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 29 |
| 3. 지식재산정보 보급·활용 안내 | 31 |

“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해 놓았는지 알아봐야겠지요! ”



1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

이번에 발명한 탈취제인데
이미 발명된 건지...



Q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의 유용성은?

A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권리취득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의 의사결정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가. Internet 이용 국내·외 정보 검색

1)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 ① 국내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서지와 전문
- ② 해외
 - 서지·전문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WIPO 특허 등 15개국(기관)
 - 서지·초록 :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12개국(기관)
- ③ 지식재산처 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 및 심판정보 조회서비스
- ④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및 검색 인터페이스
- ⑤ KIPRIS 검색식 메일링 서비스 및 찾아가는 특허 검색서비스
- ⑥ 초보자도 쉽게 원하는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한 KIPRIS 문장 검색서비스 제공
- ⑦ 해외 공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한, 일→한, 한→영 및 중→한 기계번역서비스제공



2) 국내 검색 사이트

기 관	주 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s://www.kipris.or.kr	무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www.scienceon.kisti.re.kr	
윕스(WIPS)	https://www.wipson.com	유료
위즈도메인(WISDOMAIN)	https://www.wisdomain.com	
마크프로	https://www.markpro.com	

3) 해외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

기 관	주 소		구분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국제특허	https://patentscope.wipo.int	무료	
	국제상표	https://branddb.wipo.int		
	디자인	https://designdb.wipo.int/designdb/en/index.jsp		
Cambia (Patent Lens)	https://www.lens.org/lens		유료	
Google (Google Patents)	https://patents.google.com			
Questel	https://www.orbit.com/			
THOMSON REUTERS	https://www.thomsonreuters.com		유료	
LEXISNEXIS	https://www.lexisnexis.com/en-us/home.page			

외국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을 검색하시려면

지식재산처홈페이지(www.moip.go.kr) → 지식재산제도 → 해외 주요 누리집 → 외국특허청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나.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1) 지식재산처 도서관

비특허문헌(학술지, 지식재산권 자료 등) 검색 및 열람, 복사서비스 제공

- ☎ 042) 481-5130, FAX 042) 472-3462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 복사료 : 일반우편 1page당 100원 / FAX 1page당 300원

2) 서울사무소

- ☎ 02) 3458-2266, FAX 02) 557-8414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5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3)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

- ▶ <붙임 0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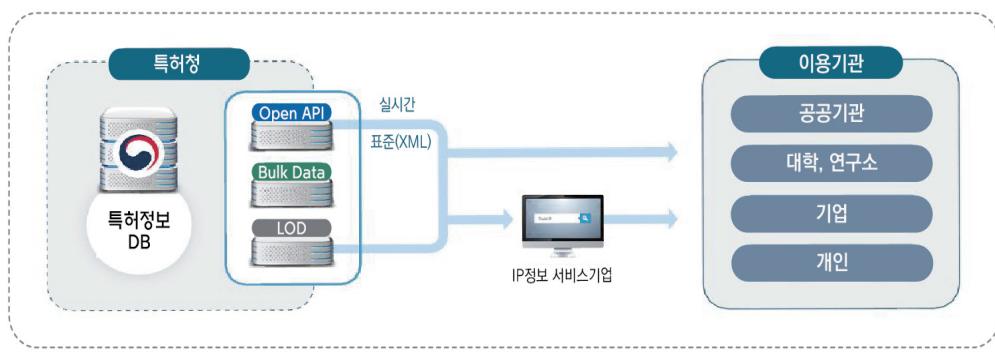
3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지식재산정보 보급·활용 안내

가.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 (KIPRISPlus)

지식재산처가 개방중인 국내외 특허정보를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Bulk Data,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1) 데이터 제공 방식

- ① Bulk Data : 지식재산정보를 온라인다운로드, FTP 등을 통해 대용량 파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
- ② Open API : 지식재산처 DB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 받아 자체 DB구축 없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방식



2) 데이터 제공 범위

- ① 국내 공보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권 공보
- ② 행정 정보 : 법적상태이력,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국내 행정정보
- ③ 부가 정보 : 특히 영한 기술용어 사전, 시소리스, 한국특허영문초록 등 부가정보
- ④ 해외 공보 :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해외 지식재산권 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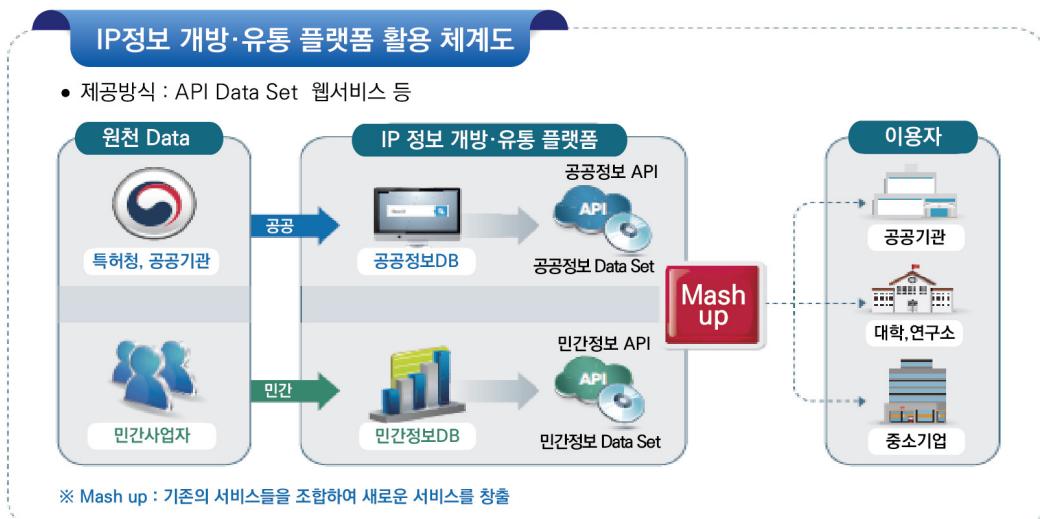
3) 서비스 이용 신청

- KIPRIS^{Plu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상품 리스트 열람 및 서비스 신청



나. 지식재산정보 활용 분야 및 체계

지식재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금융권, IT 중소기업 등에서 IP서비스, IP거래, IP평가 분야에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연구 및 상업용으로 서비스 가능



KIPRIS^{Plus} 이용 문의

- KIPRIS^{Plus} 홈페이지 : <https://plus.kipris.or.kr/>
- KIPRIS^{Plus} 고객센터 : ☎ 02) 6915-1553(1495)

제2절 ...

출원 따라하기

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34
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38
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40
4. 분할·분리·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41
5.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 46
6. 출원 관련 문의 66



1

출원 따라하기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가. 온라인 출원하기 :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①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② 공동인증서
사용등록③ 사용자등록신청
결과조회④ 전자출원SW
다운로드

①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출원인의 고유번호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에는 미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의 이미지(JPG 포맷)를 준비하여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첨부해야 함
- 향후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 수행 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여야 함(미기재시 반려)

※ 특허고객번호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우측 상단 → 특허고객등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큰 메뉴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제출인란 작성방법

- ①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도 기재
- ②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
- ④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⑤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 ⑥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시 명칭표기 방법 예시
 - ①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행정안전부장관)
 -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대한민국(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 ③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 ④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시·군·구) :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진안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서구[구는 자치구에 한정]
 - ⑤ 국립대학교 : XX대학교 산학협력단(2005.7.1일부터 전담조직으로 출원)
 - ⑥ 광역교육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교육감),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감)
 - * 지방자치단체법률 36조 근거 하급 교육행정기관은 법인이 아니어서 출원인 적격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명의로 하여야 함
 - ⑦ 국·공립 고등학교 : 대한민국(경남향공고등학교장), 충청남도(공주고등학교장)

② 공동인증서 사용등록

특허고객번호 부여가 완료된 후에는 지정된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출원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지식재산처에 등록 후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PCT 국제출원은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공동인증서 등록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우측 상단 →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에서 할 수 있음
- ※ 2013. 1. 1. 지식재산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처 사설인증서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공동인증서 (은행용, 전자거래법용, 지식재산처 전용)로 단일화
- ※ PCT에 따른 국제출원 시 WIPO 인증서는 직접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pct-safes/en/certificates.htm>)에서 발급

③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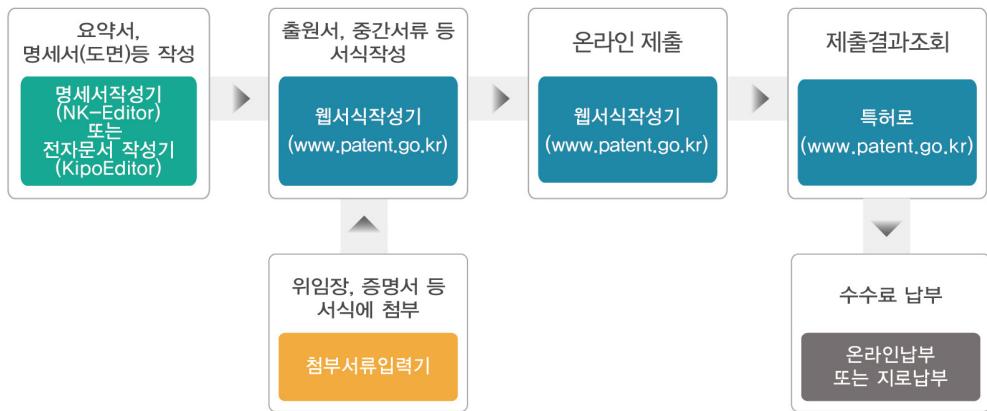
특허로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전자출원SW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 전자출원 SW 종류
- 통합서식작성기: 서식작성 SW로 출원서, 심판청구서, 보정서 등 각종 법정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명세서작성기 : 특히 · 실용신안의 명세서, 디자인 도면, 심판청구의 취지와 청구 이유, 의견 내용 등 법정서식에 첨부하는 별지 등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 전자출원 절차(특허로-고객지원-전자출원-‘전자출원 매뉴얼’ 참고)



④ 서식/명세서 작성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출원 관련 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

※ 첨부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서류 입력기를 이용하여 해당 문서를 스캔한 후 서식작성기에 첨부

⑤ 온라인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지식재산처에 온라인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 출원번호, 심판번호 등을 부여받는 단계

⑥ 제출결과 조회

-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문서의 처리결과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행사항과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에서 인증서를 통해 접속

서식작성기 없이 웹출원하기(Web작성/제출)

서식작성SW를 사용할 필요 없이 웹에서 간편하게 출원서, 중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 명세서작성기에서 작성한 명세서 파일 이외에도 상용워드(한글, MS-Word)로 작성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음(개인 출원인).
명세서 양식 다운로드와 자세한 설명은 특허로 페이지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Web작성/제출 코너에서 확인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

기 간	시 간
평 일 · 토요일 · 주중 공휴일	00:00 ~ 24:00
일요일	10:00 ~ 24:00

나.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지식재산처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1) 방문 접수

-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민원동 1층(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이후에는 지식재산처 당직자 또는 무인서류접수기(3동 1층)를 통해 24:00까지 제출가능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5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이후에는 지식재산처 당직자 또는 무인서류접수기(1층)를 통해 24:00까지 제출가능

2) 우편 접수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단,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은 지식재산처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됨(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종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서류라면 지식재산처에서 발급하는 납부안내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다음날까지 납부
-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



2

출원 따라하기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가.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발명 또는 고안 물품(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
- 2) 특히·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3) 상표등록출원 시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해야 함.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재할 경우, 심사 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상표권 설정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4)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비해 기술적 안정성과 호환성이 개선된 3D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출원 가능한 파일형식을 개정함 (규칙, 2023.12.21. 시행)

※ 출원 가능한 3D 모델링 파일형식 :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출원한 경우 도면 보정 시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5) 디자인등록출원 시 화상 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일 용량이 1출원당 200MB가 넘지 않아야 함

※ 제출 가능한 동영상 파일형식 :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AVI (Audio Video Interleave)

※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 제출된 경우 동영상 파일 형식 또는 동영상 파일형식과 2D 이미지파일의 혼합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며,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도 참고도 제출이 가능함

나. 출원에 필요한 서류

권리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전자 문서 출원	<p>1. 출원서 : 1통</p> <p>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p> <p>※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 생략 가능 하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함</p>	<p>1. 출원서 : 1통</p> <p>2. 도면* : 1통</p> <p>※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p> <p>* 도면은 가로16.5cm* 세로23.7cm 초과할 수 없음 사진은 최대 가로10cm* 세로15cm이하, 최소 가로 7cm* 세로 10cm이상</p> <p>※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p>	<p>1. 출원서 : 1통</p> <p>2. 상표견본 : 1통(A4규격 21cm×29.7cm 이내)</p> <p>※ 출원하는 상표가 훌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2장 이상 5장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p> <p>3. 상표에 대한 설명서 : 1통</p> <p>※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훌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의 설명」란 기재로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p>
서면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료 ·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단체표장 및 자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 출원 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1통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 출원 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 (업무표장등록 출원 시) 		

-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 민원/참여 → 민원서식
 -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예제는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신 후 ‘작성 예제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출원 따라하기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가. 출원자격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나. 출원일자

출원방법	출원일자
전자출원	'서류제출'을 클릭 후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날 ※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 바로 접수번호 창이 열리거나 특허로에서 확인 가능
직접제출	지식재산처 제출일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은 지식재산처 도달일이 출원일이 됨)

※ 지식재산권은 동일한 내용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원 따라하기

분할·분리·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가.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상표법 제45조)

- 1)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로 출원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
- 2) 효과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함
- 3) 기간
 - 특허, 실용신안

2009. 7. 1. 이전 출 원	2009. 7. 1. 이후 출 원	2015. 7. 29. 이후 출 원	2022. 4. 20. 이후 출 원
-----------------------	-----------------------	------------------------	------------------------

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한 후 3개월(단, 설정등록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 그날)까지

①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기간단축시, 그날까지)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거절결정등록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①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기간단축시, 그날까지) ②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③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①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기간단축시, 그날까지) ②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③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①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기간단축시, 그날까지) ②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③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	---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5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 상표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나.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실용신안법 제11조)

- 1)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
- 2) 효과 : 분리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함
- 3) 기간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다. 변경출원(특허법 제53조·실용신안법 제10조(2006.10.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 부터), 상표법 제44조)

- 1) 대상 : ① 특허와 실용신안 간
 - ② 상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 간
 - ③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
(단,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
- 2) 효과 :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3) 기간
 - 특허·실용신안 :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
 - 상표 :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 출원 보정

1) 보정서 종류

- ① 제출 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지식재산처가 보정통지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
 - 자진보정 : 지식재산처의 보정통지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등을 보정

② 제출 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 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① 서지 부분의 정정 ②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③ 미납된 수수료 납부 ④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⑤ 상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 ① 발명의 명칭 ② 요약서 ③ 명세서 ④ 청구범위 ⑤ 도면 등의 보정
-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 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 일부심사 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

2)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명세서 등 보정과 출원서 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 사용
- 출원인 및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하며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3)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 리	보정 기간
	<p>〈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3월 이내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상기 1)의 해당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특허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② 제3자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지정기간) 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특 허	<p>〈 2001. 7. 1. 이후 2009. 6. 30 이전 특허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허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p>〈 2009. 7. 1. 이후 특허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허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전(자진보정 기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 통지보정 기간) ②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실용신안	<p>〈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 (구 실용신안법 제13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 구 법 제12조(기초적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p>〈 2006. 10. 1. 이후 2009. 6.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신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실용신안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지정기간) ②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p>〈 2009. 7. 1. 이후 실용신안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법 준용

권 리	보정 기간
디자인	<p>〈 2009. 6. 30. 이전 디자인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26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서 송달전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5항) <p>〈 2009. 7. 1. 이후 디자인출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62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서 송달전까지 가능 다만, 제64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보정 가능(디자인보호법 제48조)
상 표	<p>〈 출원공고 결정전의 보정(상표법 제40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 때까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출원공고결정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 <p>〈 출원공고 결정후의 보정(상표법 제41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지정기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

■ 특허고객번호를 이중부여 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고객번호 정정]에 정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정정내용 증명 서류 : 사유서(양쪽 고객번호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정보
 - 외국인 : 성명과 주소로 확인
 - 외국법인 :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며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면 더 정확함
※ 양쪽 고객번호 상 정보가 다르면 출원인정보변경으로 정보를 일치시킨 후 특허고객번호 정정하는 것이 좋음

■ 설정등록 이후 하나의 특허고객번호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2008. 1. 1. 이전 등록된 건
 -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고객번호 정정은 불가능
- 2008. 1. 1. 이후 등록된 건
 - 아직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건인 경우,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정정 가능



5

출원 따라하기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

가. PCT 국제특허출원

1)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상 각국의 특허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 등록되고,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이러한 특허독립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국제출원방법과 PCT에 따른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됨

2) 해외 출원 방법은?

가) 전통적인 국제출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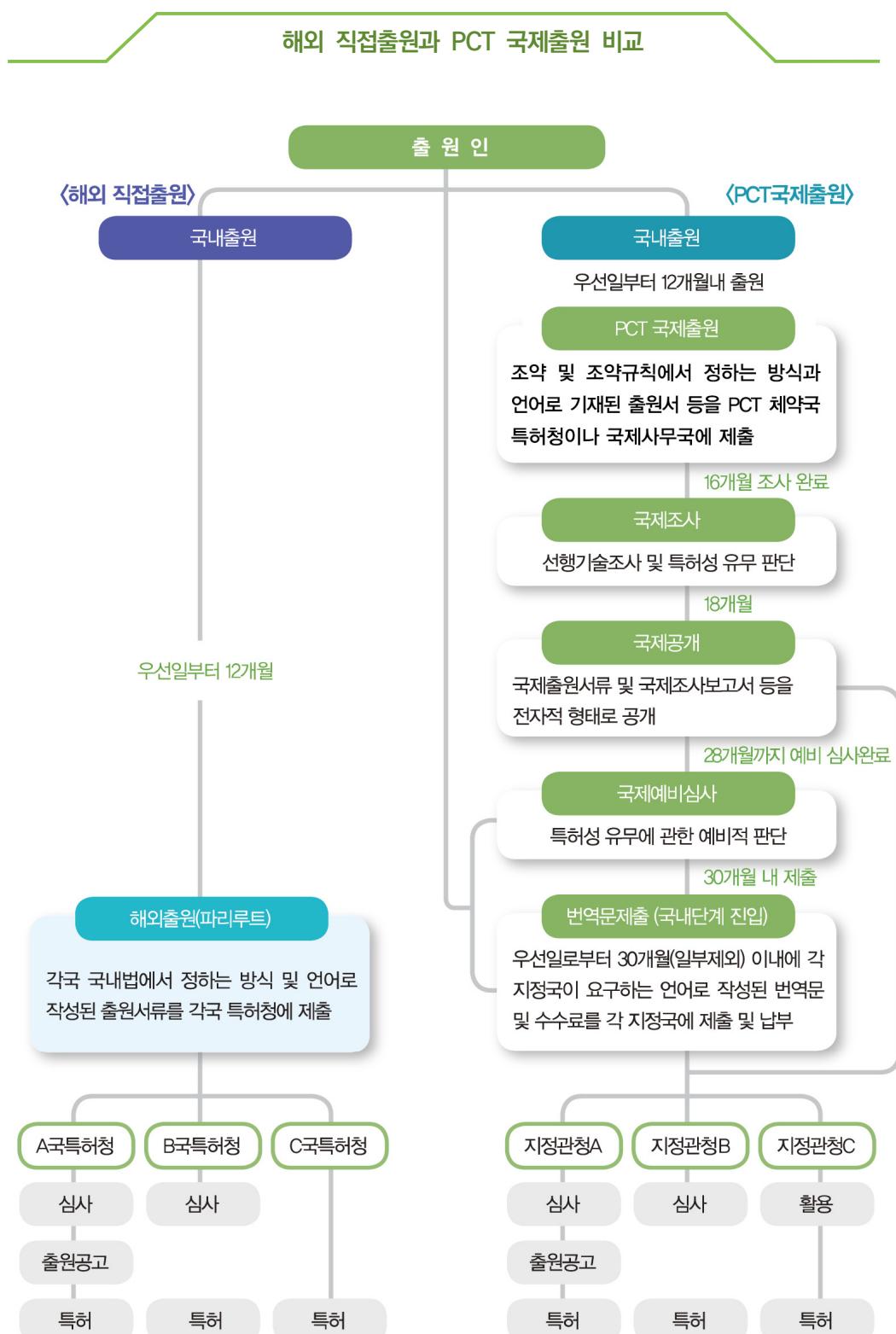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함.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PCT에 따른 출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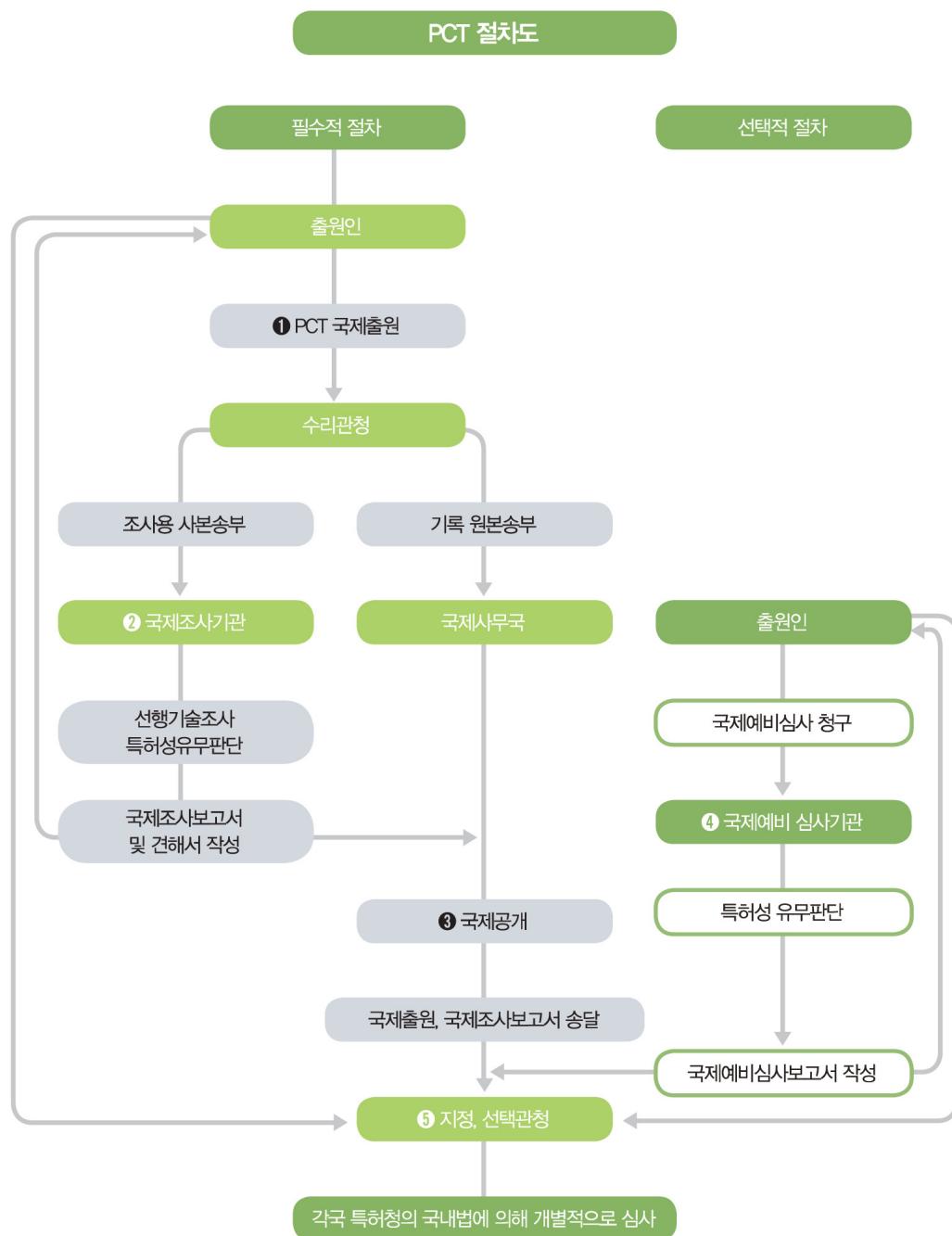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지식재산처(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 특허, 실용신안에 한정

발명과 고안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 가능하며, 상표 및 디자인은 각각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하여야 함



3) PCT 국제출원 절차



가)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수리관청은 서류작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를 함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①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② 국제출원서류

- 제출서류

-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서열목록(필요한 경우), 수수료계산서, 위임장(필요한 경우)

※ 발명의 설명도 PCT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함

-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 기탁증을 발명의 설명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
- 우선권증명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지식재산처에 송달신청하거나 DAS시스템 이용을 위한 접근코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ePCT를 이용한 전자출원

※ e-PCT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WIPO ePCT 웹사이트(<https://pct.wipo.int/ePCT>)에 접속하여 로그인, 인증, 출원서 작성, 전자서명 후 저장한 패키지파일을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서 제출

- 배부처

-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www.moip.go.kr), WIPO 홈페이지(www.wipo.int/pct/en)

③ 수수료 납부

-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서가 발송되며, 그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됨

④ 국가지정

-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①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싱가포르
- ②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③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참조하여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다)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출원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

- ① 국제공개 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② 국제공개 형식
 -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서를 발송하며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
 - ③ 국제공개 언어
 -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10개의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됨
- ※ 2009. 1. 1.부터 기존에 한국어 출원인 경우 제출하던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함.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①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싱가포르

②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2004. 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청구 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음)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 ④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마)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출원인이 국내단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룩셈부르크는 20개월, 탄자니아는 21개월)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출원 절차를 밟아야 함

①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PCT 국제출원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② 심사의 진행

-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
※ 각국별 국내단계 진입기한 :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체약국별 국내단계 진입기간 확인 가능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와 국내단계(national phase)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절차’라 한다.



PCT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



※ 주요 기간별 절차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월' 단위로 표시하여 도표화한 참조 자료임

4)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구 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파리루트)
PCT 장점	출원일 인정	1회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 기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간편함	개별국가마다 직접 해외출원
	특허 가능성 제고	지정국가 진입 전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절차를 통해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 → 유리	개별국가의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를 판단
	출원서류 작성	하나의 언어(우리나라 : 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 용이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출원서류 작성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 내)하기 전에 특허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 → 불필요한 비용지출 / 무모한 해외 출원 방지	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수수료 감면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의 특허수수료를 일부 감면 → 일부 비용절감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중소기업, 장애인 등)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음
PCT 단점	국제출원비용	PCT 국제출원 비용 추가발생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개별국 출원과 동일한 비용 소요)	개별국가의 출원 비용만 소요 → 비용절감(국제출원 비용 없음) ※ 국제출원단계의 비용 없음
	이중적 심사절차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2회)를 받아야 하므로 이중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1회) → 심사절차 간편함 ※ 국제출원단계의 심사절차 없음
	기간의 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개별국가 진입 후의 기간 준수의무는 PCT와 동일 ※ 국제출원단계의 절차 없음

5) 용어해설

- ①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기관
- ②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 ③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④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지식재산처)
- ⑤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 ⑥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지식재산처

6) 참고사항

① 도달주의 채택

PCT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과 달리 우체국 소인 확인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

② 지정국의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 지정국의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
 - 지정국의 삭제는 “지정취하”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04. 1. 1. 이후 국제출원부터는 국제출원 시 특정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국제출원일 당시의 모든 체약국이 지정국이 되는 자동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지정국을 추가하는 제도는 폐지됨

③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을 국어로 제출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내에 출원인의 성명·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특허법 제20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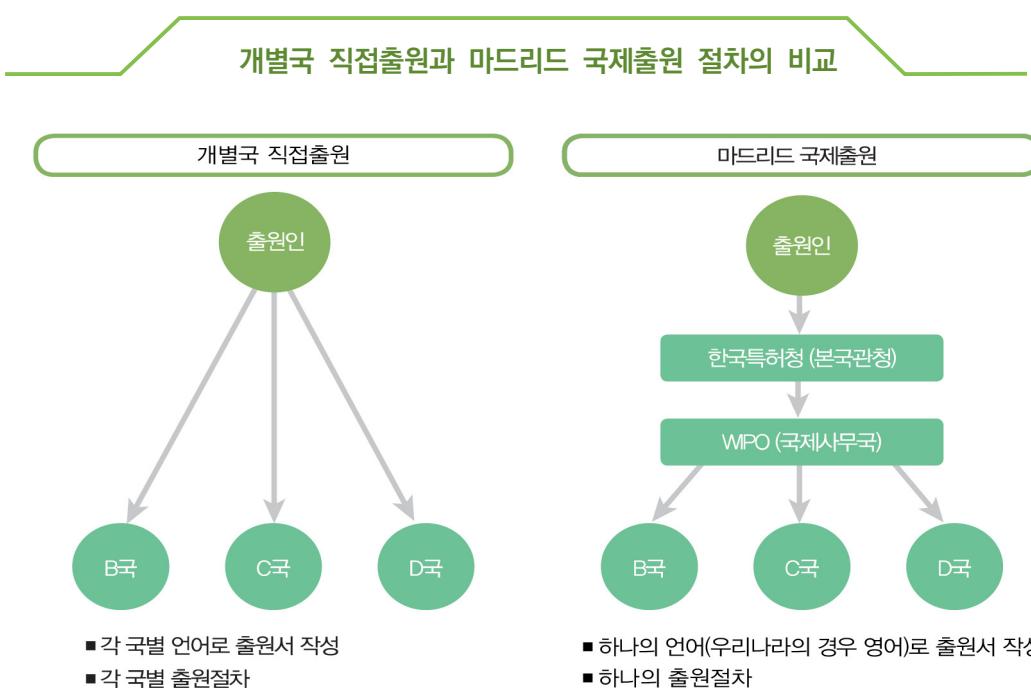
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1)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그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

2)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구분하면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임



3)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처(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출원상표 (기초출원) 및/또는 등록상표(기초등록)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함

㉡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은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상품과 동일/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② 출원인(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 ㉠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③ 국제출원의 언어

- ㉠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정함
-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는 영어를 선택함

④ 국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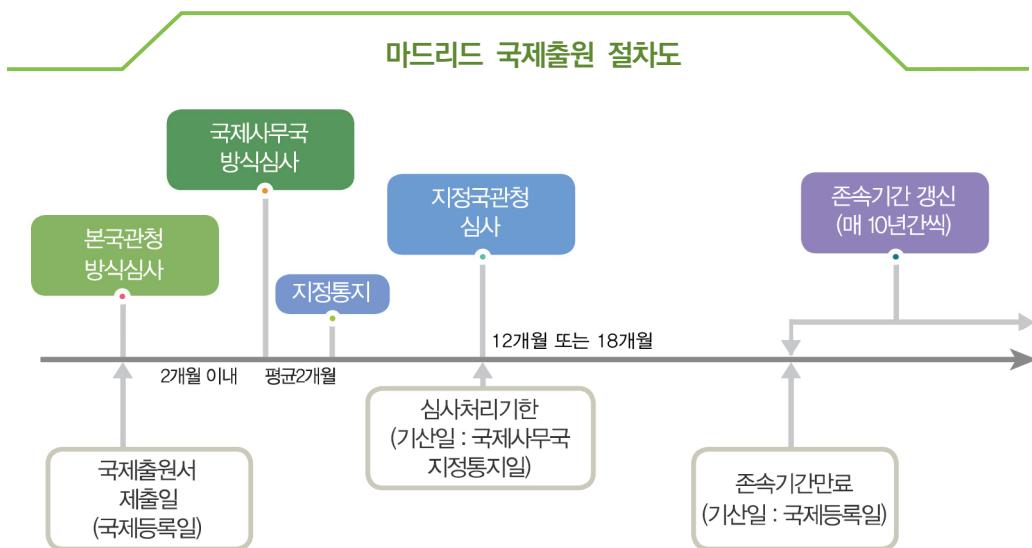
- ㉠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이 마드리드 의정서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
- ㉡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 ㉢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 ㉣ 국제사무국은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관청 및 본국관청에 통보하고 출원인에게 증명 사본을 송부

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 가능

⑥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4)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및 종속성

① 장점

㉠ 간편한 해외상표출원 절차

본국관청(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 편리한 상표권 관리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등의 신청을 각 나라마다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 사후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의 가능

최초 국제출원 시,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② 종속성

㉠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이 취소,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포기되거나, 거절, 철회, 취소 또는 무효의 최종결정의 대상인 경우

㉡ 국제등록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결과로 지정국에서 보호 범위도 그 만큼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 집중공격(Central Attack)

제3자(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을 집중공격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면 그 소멸된 만큼 국제등록의 상품/서비스도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상표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

5) 용어해설

①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내 출원인이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를 본국관청으로 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

② 국제상표등록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해외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한 국제출원

㉡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함

※ 상표법 등에서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모든 출원을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음

③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

㉠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출원

㉡ 국제사무국은 국제공개를 통해 각 지정국에 해당 상표가 출원되었음을 통보하고 각 지정국은 이때부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등록과는 구별됨

④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출원 계속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 때 전자를 기초출원, 후자를 기초등록이라고 하고 기초출원 및 또는 기초등록은 둘 이상일 수 있음

⑤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지식재산관청

⑥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거절/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6) 국제출원서 제출 등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서 제출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MM2) 1부를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전자출원과 서면출원 모두 가능)

※ 국제출원서(MM2) 서식은 WIPO(세계자식재산기구) 웹사이트(<https://www.wipo.int/madrid/en/forms>)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②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금액을 스위스프랑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

7) 체약당사자(가입국) 현황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가입국)는 2025년 11월 기준 115개(131개국)

8) 참고자료

- 지식재산처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www.moip.go.kr> > 지식재산제도 > 해외상표출원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
- 국제등록부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3.wipo.int/madrid/monitor/en/>
- 국·영문 상품명칭 검색 서비스 : 특허로 > 고객지원 > 참고자료 > 분류코드 > 상품분류코드
- NICE 분류 영문명칭 검색 : <https://www.wipo.int/en/web/classification-nice>
- WIPO 상품명칭 검색 : <https://webaccess.wipo.int/mgs/>
-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s://madrid.wipo.int/feecalapp/>

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1)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디자인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2)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①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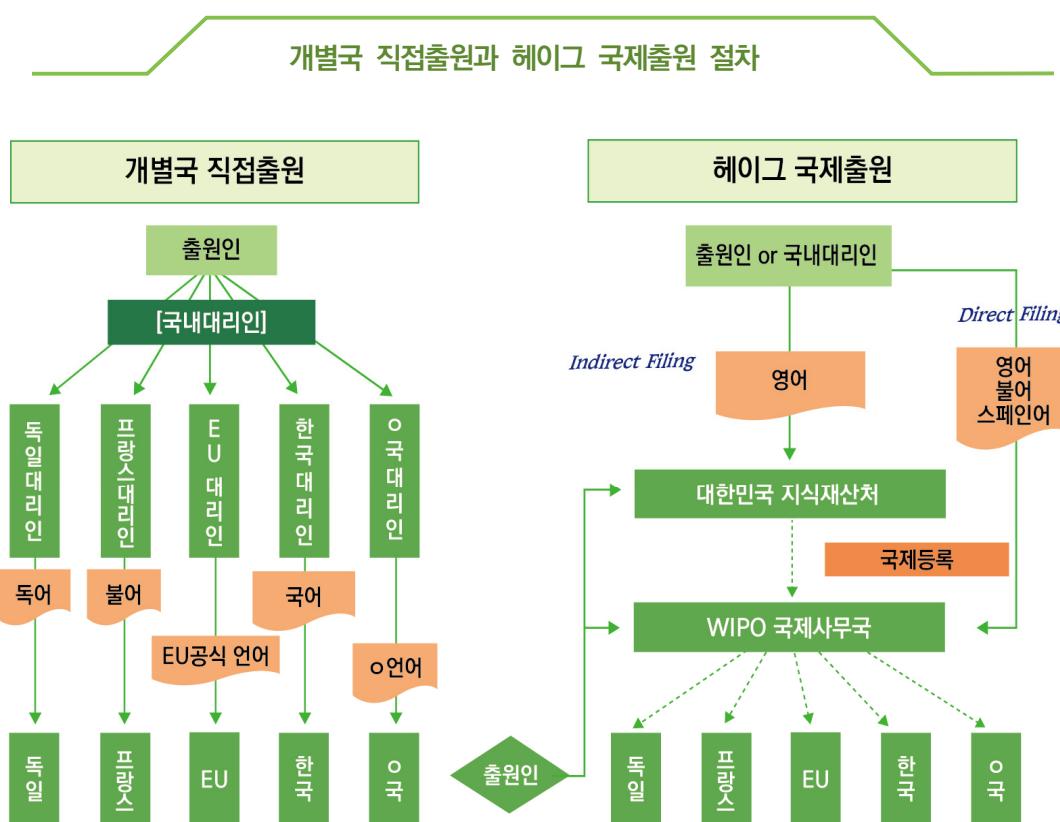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함

②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

헤이그 협정에 따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정부간 기구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 협정의 당사자로 가입함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의 비교



3)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개요

① 헤이그시스템의 이용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협정에서는 헤이그 출원 자격을 가진다고 표현함

첫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인 자(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둘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둔 자

셋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자

넷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자

②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출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출원인이 선택한 언어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국제출원서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③ 국제출원서 제출 방법

① WIPO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출원인이 WIPO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WIPO에 제출할 때는 WIPO에서 제공하는 E-Hague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E-Hague는 WIPO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② 우리나라 지식재산처를 경유한 출원

우리나라를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정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국제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첫째, 지식재산처가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수수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④ WIPO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되며,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하지 못함

⑤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니라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며,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함

⑥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①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WIPO에 통지할 수 있음.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음

⑤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나,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⑥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지고,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⑦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관청에 의한 실제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WIPO에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됨

⑧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함
(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며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① 국제출원의 하자

국제출원이 WIPO 접수 당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WIPO는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하며, 일부 하자는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러한 하자통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하자보정서의 제출은 WIPO에 직접 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수료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함

② 선언사항의 확인

헤이그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연기, 디자인의 단일성,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을 통하여 특정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하려는 출원인은 해당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을 확인하고 국제출원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별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의 내용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③ 국제등록의 변경

국제출원 이외의 소유권 변경,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변경 등 각종 변경 신청서는 수리관청(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할 수 없고 권리자가 WIPO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④ 국제등록의 갱신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효력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DM/4)를 WIPO에 직접 제출하고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⑤ 체약당사자(가입국) 현황

헤이그 협정 체약당사자(가입국)는 2025년 10월 기준 82개(99개국)

5) 용어해설

① 국제등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실행된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하며, 국제등록이 지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자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등록은 아님

② 체약당사자

헤이그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 간 기구

③ 국제분류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정해진 분류로 로카르노 분류의 최신판은 2025년 개정된 15판이며 32개류, 241개군, 5,219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로고와 인테리어 등을 분류하는 32류는 제외하고, 31개류 239개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④ 보호거절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은 그 영역 내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통지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 거절을 통지하는 것을 말함

⑤ 보호부여기술서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통지서

⑥ 수리관청

헤이그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지식재산처)

⑦ 지정관청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⑧ 국제사무국

국제등록, 국제공개 등 헤이그 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WIPO의 소속 기관

6) 헤이그 관련 사이트

- 지식재산처 누리집 헤이그 페이지 : <http://www.moip.go.kr> > 지식재산제도 > 해외 디자인 출원
- WIPO 헤이그 홈페이지 :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
- WIPO 전자출원(E-Hague) : <https://hague.wipo.int/#/landing/home>
- 국제 등록부 조회 : <https://designdb.wipo.int/designdb/hague/en/>
- 국제 공보 조회 : <https://hague.wipo.int/#/bulletin/browse-by-bulletin>
-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s://www.wipo.int/web/hague-system/fees/calculator>
- 로카르노 분류 영문 검색 : <https://www.wipo.int/en/web/classification-locarno>
- 로카르노 분류 한글 검색 : <http://www.moip.go.kr>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6

출원 따라하기

출원 관련 문의

문의처	연락처
특허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 1544 - 8080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 (국내출원)	☎ 042) 481 - 5541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PCT·마드리드·해이그)	☎ 042) 481 - 5208, 5206, 8552



제3절 ...

심사 알아보기

- | | |
|-------------------|----|
|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 68 |
| 2.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 73 |
| 3. 디자인 심사 절차 및 제도 | 78 |
| 4. 맞춤형 심사제도 |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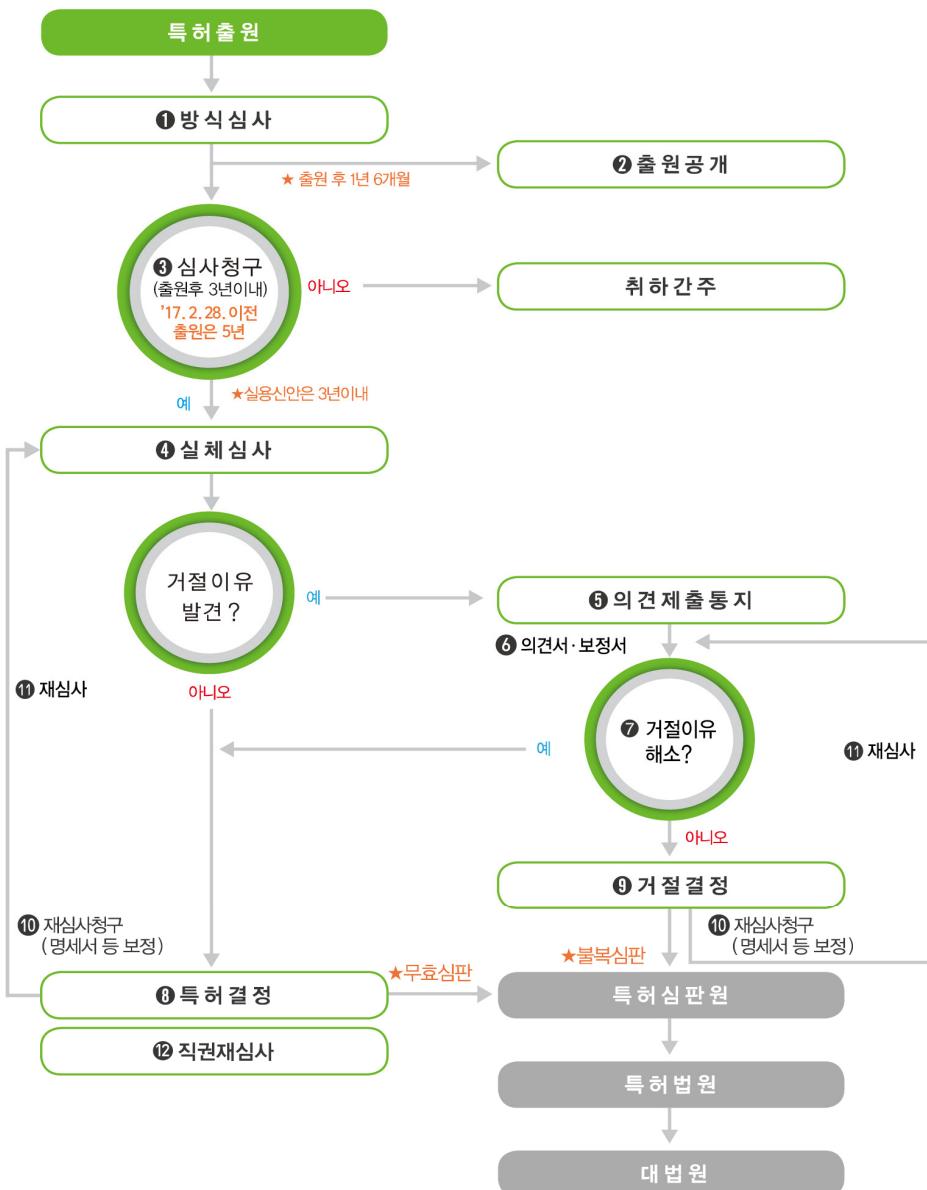


1

심사 알아보기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가. 흐름도



※: 재심사 후 특허/거절 결정 이후에 다시 재심사 청구할 수 없음

1)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음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2) 출원공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조약우선권이나 국내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됨

조약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에 의한 조약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출원 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함

국내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발명으로 거절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를 발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 될 수 있음.

국내 우선권주장 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출원내용을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

- 공개의 효과
 - 서면 경고 가능, 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내 서면제출,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제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다만,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

※ 정보 제출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해당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자식재산처에 제출할 수 있음

※ 상표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출원공고 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3) 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함.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2017. 2. 28. 이전 특허출원은 5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심사청구제도

- 심사청구제도는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 등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특 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2017. 2. 28. 이전 출원은 5년 이내)
실 용 신 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디자인 · 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4)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 순서대로 하며,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함

※ 심사청구일 기준 평균 약 16.1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됨(2023년 평균)

5)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 특허, 실용신안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

6) 의견서/보정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7) 심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함.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함

8) 특허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함.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에 자식재산처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음

직권보정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직권 보정된 사항은 특허결정등본과 같이 출원인에게 통지됨. 출원인은 설정 등록을 위한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음

9) 거절결정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식재산처에 '자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10) 보정/재심사청구

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재심사에서 다시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되었거나 거절결정에 관한 불복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11) 재심사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통상의 출원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시작함

재심사청구 요건

① 특허결정되거나 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청구 시 반려함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12) 직권 재심사(등록결정 단계 이후)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음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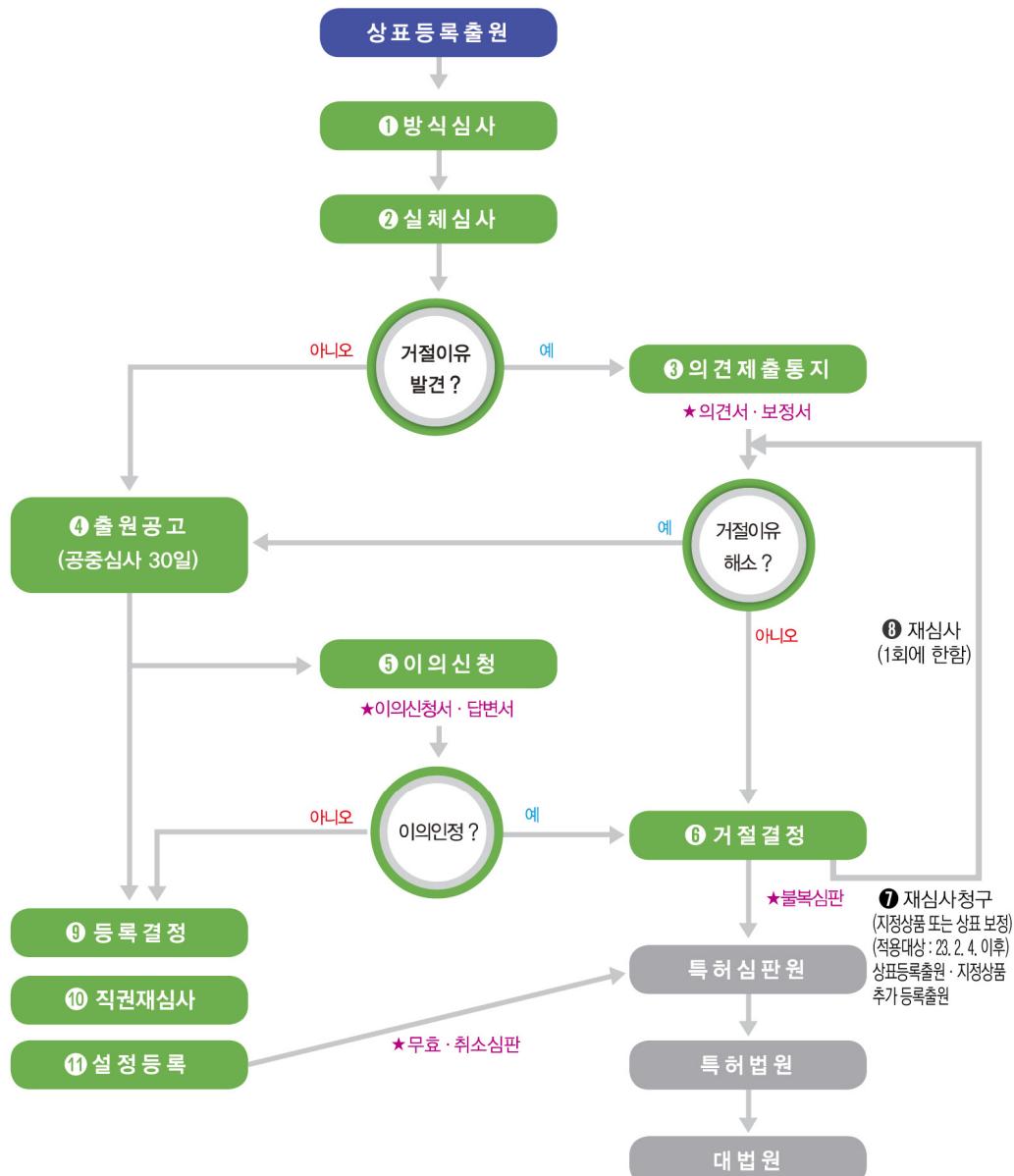


2

심사 알아보기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가. 흐름도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음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실체심사

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하며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2.8개월 소요(24년 기준)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사항은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음

※ 상표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상표와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4회(매회 1개월)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가능(2개월씩 일괄신청 가능)
-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절차계속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④ 출원공고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 등을 통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함

※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 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고(30일간)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제도임(공중심사)

⑤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

⑥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⑦ 재심사청구(2023.2.4.부터 시행)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 되었거나 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 2023.2.4.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적용(국제상표등록출원은 미적용)

⑧ 재심사(2023.2.4.부터 시행)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거절결정 직전으로 돌아가 통상의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함

재심심사청구 요건

①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청구 시 반려함

②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지정상품 및 상표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할 것

- 보정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⑨ 등록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함

⑩ 직권 재심사(등록결정 단계 이후)

심사관은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음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⑪ 설정등록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되면 상표권이 발생함

1)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제33조),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

구 분	사례
보통 0상표	불소치약(치약), 호두과자(과자류), 호마이카(가구류), 초코파이(과자류), JEEP(승용차) 등
관용 표장	정종(청주), ~TEX(직물류), ~깡(스낵류), NAPOLEON(코냑), NET(통신업), LON(섬유류)
성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 : 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소고기등) 등• 품질 : SUPER, 순정• 원재료 : SILK(블라우스)• 효능 : 강력(본드), Flex Control(전기면도기)• 용도 : KICKERS(축구화)• 기타 : 형상, 수량, 가격, 사용방법, 가공방법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핀란디아, OXFORD, 서울, 백두산, 한라, 남대문, 불국사 등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3M, 9V, BETA, E- PRINT(프린팅프레스),  ,  ,  ,  ,  등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MR. 토스트, 이게 웬떡이냐, DRINK IN THE SUN, it's MAGIC 잇스매직 등

주요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

※ 아래는 주요 부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이며, 전체 부등록 사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을 참고

- 국기 등 공공기관의 감독 · 증명용 인장과 동일 · 유사한 상표
-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 ·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 저명상품이나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나.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1) 비전형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동작상표, 소리·냄새상표 등을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한 일반적인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2)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2개 류 이상일 경우에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간편해짐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함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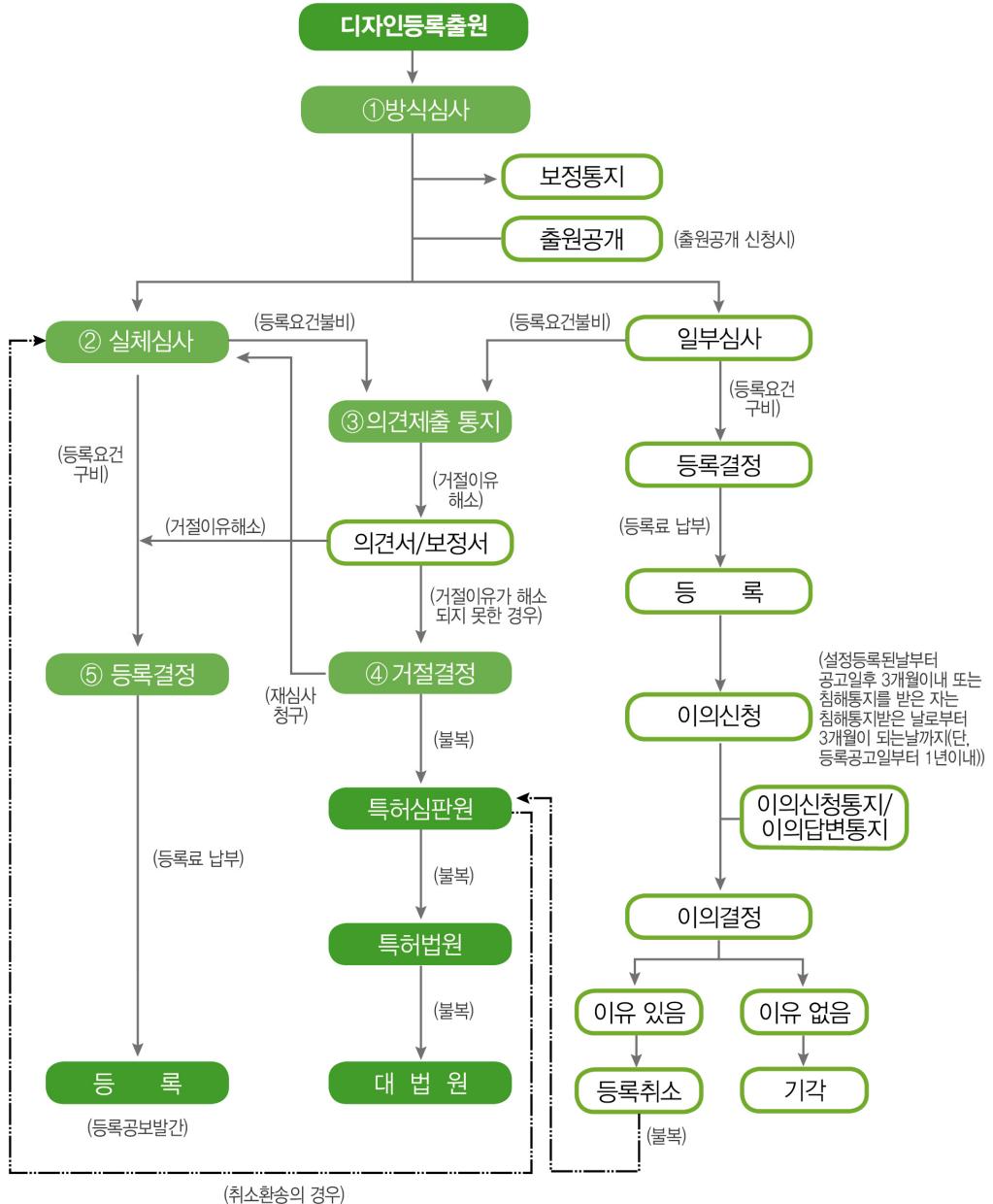


3

심사 알아보기

디자인 심사 절차 및 제도

가. 흐름도



1) 디자인 심사 절차(실체심사)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음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출원 순서대로 하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차 결과 통지까지 평균 6.7개월 소요(2025. 10. 기준)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됨

※ 디자인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4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가능(2개월씩 일괄신청 가능)

④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재심사에 의한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특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재심사청구 요건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소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청구 시 반려함

②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도면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도면 등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⑤ 등록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하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하고 등록공고함

2)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직물지, 포장지 및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기본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 않음)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 디자인일부심사분류 : 1류(식품),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기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

①-1 일부심사 출원에 대한 기본요건 심사

-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 및 용이 창작성 여부를 심사

②-1 일부심사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됨
- 일부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침해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함



나.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①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동일
-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 제한 :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응접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참조)

③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 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⑥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4

심사 알아보기

맞춤형 심사제도

가.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1) 우선심사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선심사 신청 후 평균 3.0개월 이내(‘24년 기준)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음. 단, 초고속 심사(‘25년 10월 신설)의 경우 평균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늦은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 신청 시기 및 절차 등 :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늦은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3) 일반심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청구 후 평균 16.1개월 이내(‘23년 기준)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음

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

1)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2)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건은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부터 우선심사여부결정 및 심사착수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5개월) 소요됨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 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됨



3) 신청대상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5조)
-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9조제1항)

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공통 : 11개 분야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단,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지식재산처에서 특허(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

나. 특허출원 : 9개 분야

-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
-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4개 분야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초고속심사 신청 가능

라. 디자인등록출원 : 2개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1) 정의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 순서에 의하나(상표법 제53조제2항),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상표법 제53조제2항)

2)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짐

3) 신청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③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 또는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해당 출원
- ⑤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⑦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 ⑧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 ⑨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 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3) 신청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PART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제4절 ...

등록 신청하기

- | | |
|----------------|-----|
| 1. 지식재산권 등록이란? | 90 |
| 2. 기본 등록 신청 | 91 |
| 3. 변동 등록 신청 | 96 |
| 4. 등록 보정 제도 | 100 |
| 5. 등록 관련 문의 | 1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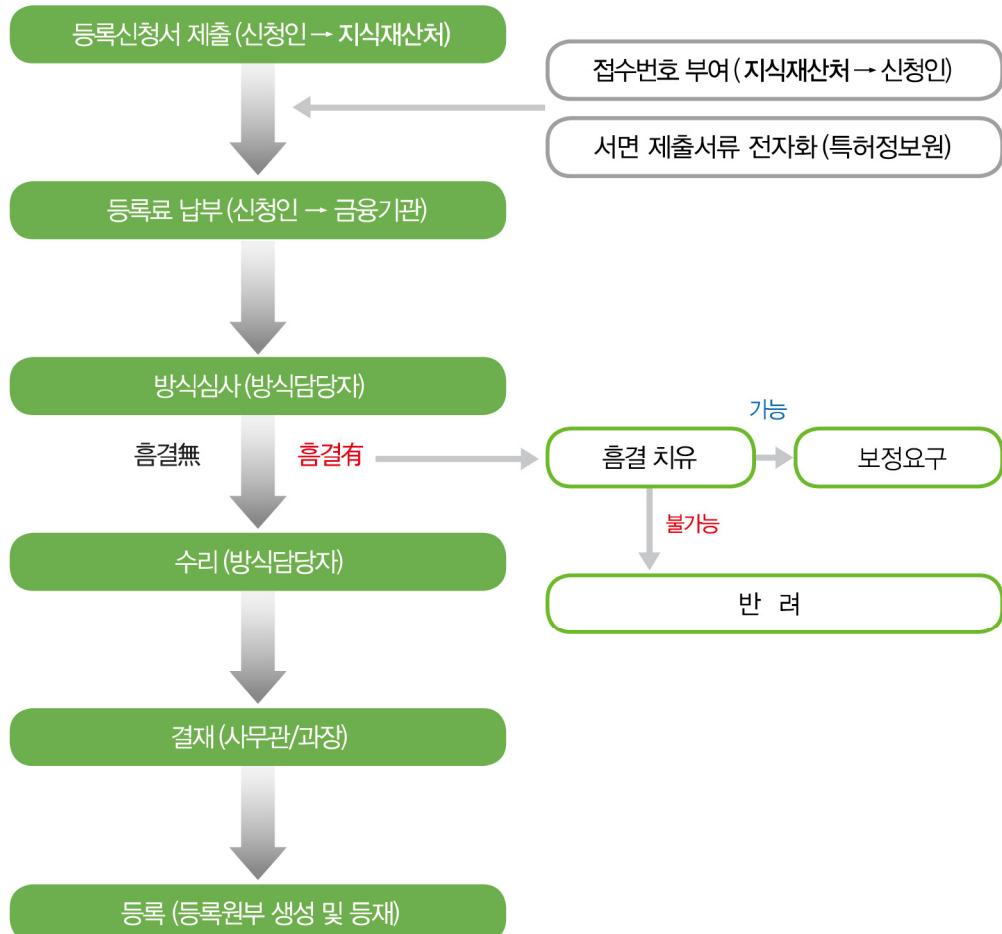
1

등록 신청하기

지식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 특허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지식재산처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에 비치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의 총칭

※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권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공적장부를 등록원부라 하고,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된 사항을 등록사항이라 함





2

등록 신청하기

기본 등록 신청

가. 신규설정 등록

1) 정의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또는 심결)이 된 경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

2) 구비서류

①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 1부

- 등록료가 면제인 경우에도 신규설정을 위해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② 감면·면제사항 증빙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납부방법

①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우체국은 납입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②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가능

③ 납부서 제출을 통한 신규설정 등록료 납부

- 우편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지식재산처 본부(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를 제출한 후
은행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또는 특허로 사이트의 ‘웹작성/제출’에서 납부서 작성하여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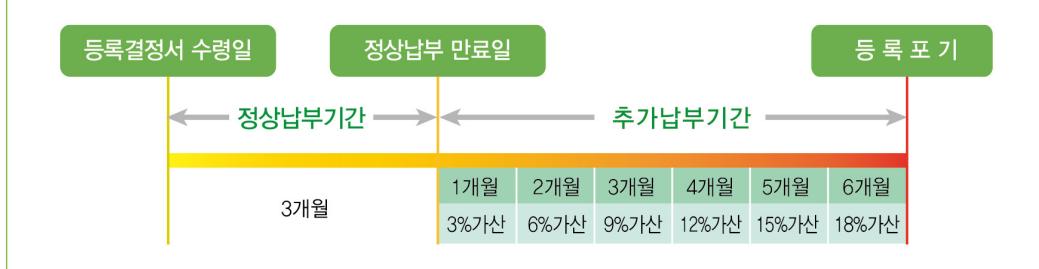
4) 납부기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월마다 3%씩 가산율이 적용됨. 1개월-3%, 2개월-6%, 3개월-9%, 4개월-12%, 5개월-15%, 6개월-18%)

예시)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② 상표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상표등록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음

※ 상표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분할납부제도

- 상표권 2회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2010. 7. 28.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10년분을 한번에 납부하거나 5년분을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음
 - i) **(설정등록료)** 납부서의 '납부회차' 항목을 선택하고, 1개류마다 122,000원씩의 설정등록료를 기재한 후 1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개마다 1,000원씩의 가산료를 합산하여 기재(1회차에는 등록면허세 9,120원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
※ **(납부서를 이용하여 2회차 납부 시)** '구분항목'에 '설정등록료'를 선택하고 '납부대상의 표시'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납부회차'는 '2회차'가 선택됨
 - ii) **(갱신등록료)** 갱신등록신청서의 '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분할납부'라고 표시하고, 1개류마다 184,000원씩의 갱신등록료를 기재한 후 1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개마다 1,000원씩의 가산료를 합산하여 기재(1회차에는 등록면허세 9,120원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
※ **(납부서를 이용하여 2회차 납부 시)** '구분항목'에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대상의 표시'에는 '등록번호'를 기재
 - iii) 1회차 납부 후 2회차 납부 기간은 설정등록일(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권 소멸

나. 연차등록료 납부

1) 정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 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내에서 최초설정등록(3년분)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2)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연차등록료) 1부

※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 납부서 없이 등록료 납부 가능

- 감면·면제사항 증명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납부방법

①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②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가능

③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 우편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지식재산처 본부(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를 제출한 후
은행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또는 특허로 사이트의 ‘웹작성/제출’에서 납부서 작성하여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④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등록한 계좌번호에서 정납 만료일에 자동이체)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에서 신청

4) 납부기간

등록료가 납부되어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 연도의 특허료를 미리 납부
※ 납부기간 경과 후 추납기간(6개월) / 회복기간(3개월)

예시) 4년차 연차 등록료 납부기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연차등록료의 납부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4년차가 시작하기 전날까지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에 3%, 2개월 이내 6%, 3개월 이내 9%, 4개월 이내 12%, 5개월 이내 15%, 6개월 이내 18% 가산된 금액을 납부)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정상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81조)



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1) 정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

※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권의 갱신 제도 변경 (2010. 7. 28.) :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 신청·납부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

※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등록료 보전제도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등록)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실용·디자인)

특허(등록)료 추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3

등록 신청하기

변동 등록 신청

가. 권리 이전 등록

1) 정의

- ①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 ②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함
※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2) 주요 등록원인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부서류
권리 이전 등록	<p>[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p>	양도	① 양도계약서 ②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①, ②, 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법인 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의 경우 생략 가능
		법인 분할	① 권리승계확인서 또는 공증 받은 분할계획서 ※ 권리승계확인서는 분할, 피분할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법률규정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는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사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		

나. 실시(사용)권 설정

1) 정의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사용권이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적 권리가 아님

2)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부(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다. 말소등록

1) 정의

말소등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

2)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포기서 등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발급)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작성)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통(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라. (근)질권 설정

1) 정의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를 말함

질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설명] A가 친구인 B에게 돈을 일천만원 빌렸는데 A가 당장 돈을 상환(변제)하지 못할 경우, A가 가지고 있는 일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B가 보관하면서 돈을 갚는다면 보석을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를 질권 설정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 A가 채무를 변제하는 않는다면 B는 합법적으로 그 보석을 처분해서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특허권자(질권설정자) : A

질권자 : B

특허권 : 보석

2) 구비서류

- 질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 : 질권설정계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부(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유질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

변동등록시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구 분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특 허 권 자	이전	o		x	x	x
	질권설정	o		x	x	x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o		x	x	x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o		x	x	x
	포기	x		o	o	o
전 용 실 시 권 자	이전	o	o		x	x
	질권설정	o	o		x	x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o	o		x	x
	포기	x	x		o	o
통 상 실 시 권 자	이전	o	o	o		x
	질권설정	o	o	o		x
	포기	x	x	x		o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4

등록 신청하기

등록 보정 제도

가. 정의

보정이란 절차적 사항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정기간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절차

나. 도입배경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미한 흠결로 인해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2012. 7. 1.일자로 등록보정제도를 도입·시행

다. 주요내용

1) 흐름도



- 담당자** • 흡결 있는 서류 발견 시, 당해 흡결이 치유 불가능한 흡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기회를 부여(보정요구서 발송)
- 신청인** • 보정요구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보정서를 제출하여 흡결이 치유될 경우 수리
- 담당자** • 치유 불가능한 흡결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이유통지서를 발송하고 반려이유통지서에 대해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통해 의견 제출 가능

2) 주요내용

① 등록보정서의 기능

구 분	내 용
신청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주소, 특허고객번호, 등록원인, 실시권의 내용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 가능
첨부서류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락된 서류의 제출 • 제출한 서류에 경미한 흡결이 있는 경우 흡결을 치유하여 다시 제출 가능 (단,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 불가)
등록 수수료의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가능

② 등록보정 방법

구 分	내 용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보정서(특허권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를 통해 제출. 신청서 수정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등록보정서에 기재하고 제출서류는 등록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보정서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식재산처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함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인 경우, 2개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기간 이내에는 보정횟수의 제한이 없음
보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5

등록 신청하기

등록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 042) 481-5244

등록신청 시 주요 흔결 사유

-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변동등록
 - 등록의무자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명칭(성명) 및 주소변경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해야 하며 '07.12.31. 이전에 설정등록되었으나 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도 함께 신청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및 등록번호 오기재
 - 연차등록료 중복납부(예: 공동권리자가 각자 납부한 경우)
※ 유의사항 :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만 납부
 - 연차등록료를 전년도에 납부했던 계좌로 잘못 납부
※ 유의사항 : 계좌번호는 일회성이므로 반드시 납부할 계좌를 정확히 확인하여 납부해야 함

제5절 ...

심판절차 밟기

- | | |
|--------------------|-----|
| 1. 특허심판이란? | 106 |
| 2. 특허심판의 종류 | 107 |
| 3. 특허심판 이용안내 | 109 |
| 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 113 |
| 5.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 114 |

참고



특허분쟁의 첫걸음, 경고장 바로 알기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실시제품이 특허출원/특허발명과 동일함
- 특허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지급해야 함
-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 함
※ 공개/등록 공보, 등록원부 첨부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 특허권 침해가 아닌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경고장의 내용 중 확인해야 할 사항

- 등록원부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여부 확인
- 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지되었는지 확인

경고장 검토 후 조치 사항

- 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확인 가능
-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권(상표)침해분쟁 바로 알기

침해가 의심될 때 권리자의 대응방법

- 침해한 실시자(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발송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원에 청구
- 특허권(상표권) 고의로 침해시 침해죄로 검찰, 경찰에 고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실시자(사용자)의 대응방법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침해분쟁 관련 소송의 종류

1. 손해배상
2. 특허(상표)권 침해금지
3.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
4. 신용회복 등

침해분쟁 관련 심판의 종류

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3. 무효심판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기본 판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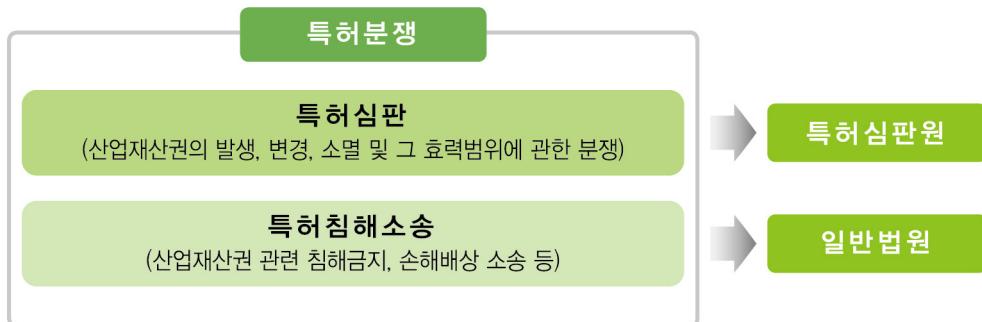
1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이란?

가. 정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확인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

(※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나. 특허소송 제기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가기간 지정시 연장)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2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의 종류

가. 결정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022.4.20.부터 시행)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 상표) ※ 특허·실용신안은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폐지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022.4.20.부터 시행)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정정심판	특허(실용신안)권자가 특허(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발명/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청구하는 심판	설정등록 후 청구가능 (소멸 후에도 가능, 심결에 의해 무효가 확정된 이후에는 불가)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나. 당사자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를 근거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발명 / 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 /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의2
상표등록 취소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권에, (불사용, 부정사용 등) 취소사유 발생 시 그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	일부 취소사유(부정사용 등)는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표법 제119조, 제120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 가능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특허발명 등이 선행 타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 허락을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 가능 (현존 권리간의 실시 저촉해결 목적)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3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 이용안내

가.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심판서류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1)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취지】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출원(등록)대상 청구의 취지 기재 시 권리구분과 출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예) “상표등록 제43-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X) → “상표등록 제40-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O)
“단체표장등록 제40-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X) → “단체표장등록 제43-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O)

② 결정계 심판

- 청구대상은 특허(실용신안, 상표('23. 2. 4. 이전 출원), 디자인)출원 전체이어야 하며, 출원 중 일부 청구항이 되어서는 안 됨

예) “원결정을 취소한다. 2020년 특허출원 제00호는 등록결정한다.”(O)
“원결정을 취소한다. 2020년 특허출원 제00호의 청구항 제1항을 등록결정한다.”(X)

- '23. 2. 4. 이후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거절결정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③ 당사자계 심판

- 청구대상은 ① 전체 청구항(지정상품) 또는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 ㉡ 【청구의 취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지정상품)의 개수와 【청구의 이유】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지정상품)의 개수는 동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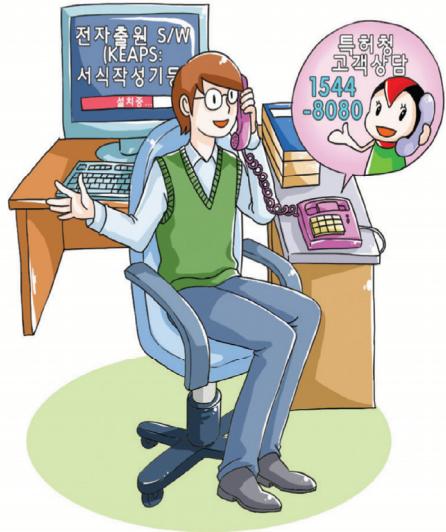
④ 심판종류에 따른 청구의 취지 작성예시

구 분		작성예시
결정계	거절결정 불복심판	“원결정을 취소한다. 2016년 특허(상표)출원 제00호는 특허(등록)결정한다.”
	정정심판	“특허 제00호의 명세서(도면)를 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도면)와 같이 정정한다.”

구 분		작성예시
당사자계	권리범위 확인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일부)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전체)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무효심판	<p>“특허 제00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을 무효로 한다.”</p> <p>“특허 제00호를 무효로 한다.”</p> <p>“상표등록 제00호의 지정상품 중 00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p>
	상표등록 취소심판	<p>“상표등록 제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p> <p>“상표등록 제00호의 지정상품 중 00, 00의 등록을 취소한다.”</p>

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

-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심판서류를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받아볼 수 있음
- 심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전자출원 S/W(KEAPS : 서식작성기 등)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접수할 수 있음
※ 이전에 온라인 출원한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 필요 없음
-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



평일·토요일·주중공휴일	00:00 ~ 24:00
일요일	10:00 ~ 24:00

※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시 의문사항은 지식재산처 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신속·우선심판

심판사건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

* 신속심판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 가능

구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처리기간	통상 3개월	통상 6개월
도입시기	'09. 7. 1	'98. 3. 1
근거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
대상	<p>1.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침해금지기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시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 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제외</p> <p>2.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p> <p>3.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p> <p>4.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p>	<p>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p> <p>2. 삭제</p> <p>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p> <p>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p> <p>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p> <p>6.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p> <p>7.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자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p> <p>8.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p> <p>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p> <p>10.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 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p> <p>11. 지식재산처가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 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p> <p>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p>

구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p>13.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p> <p>14.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정</p> <p>15.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p> <p>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p> <p>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 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p> <p>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p> <p>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p> <p>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p> <p>16.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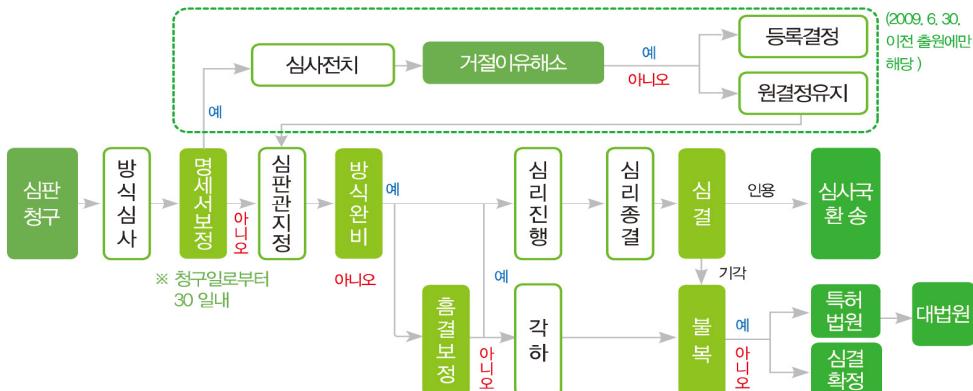
4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가. 결정계 심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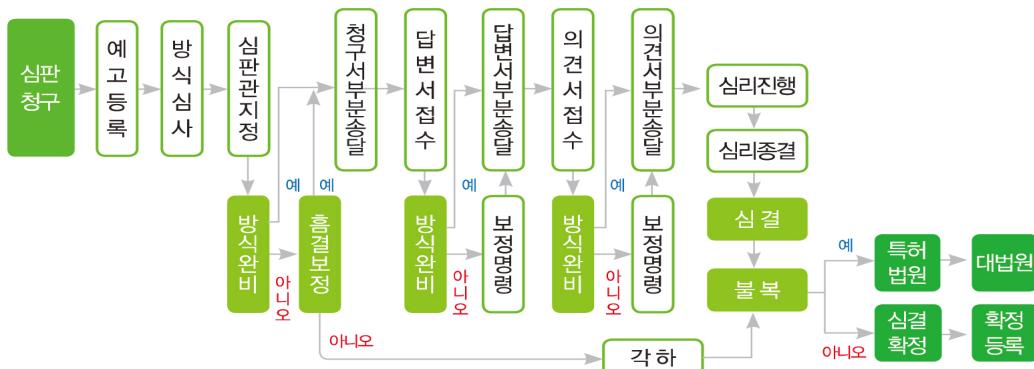
※ 심사전치제도(2009.6.30. 이전 출원)는 특허 · 실용 신안 ·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시행)

- 심사전치제도 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 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 결정된 출원 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나.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5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가. 지정기간연장 및 기일변경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술심리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나.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1) 법정기간연장신청은?

- 거절결정서 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을 1회 30일에 한하여(재외자에 한해 1회 30일 추가 연장 가능)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함

2) 지정기간연장신청은?

- 심판절차를 밟고 있는 심판당사자(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가 서류의 제출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함

3) 부가기간지정신청은?

-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1회에 한하여(내국인 20일, 재외자 30일)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함

기간연장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법정기간연장신청서(재심청구 or 불복심판청구 목적)는 반드시 자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함(디자인 제외)
 - ▶ 특허심판원으로 제출할 경우 법정기간연장신청서는 반려됨
- 2) 심판청구에 대한 최초 답변서 제출을 제외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승인 될 수 있음
- 3) 아래의 서류에 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장신청서는 반려됨
 - ▶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구술심리기일자정통지서, 상표/디자인/기술 설명회개최통지서 등
- 4)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불변기간 (소제기 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는 특허심판원에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해야 함
 - ▶ 부가기간의 지정이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음

다. 심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 481-5583

제6절 ...

수수료 납부하기

1. 수수료 일람표	116
2.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119
3.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122
4.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123
5.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124
6. PCT 국제출원 수수료	125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126
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27
9.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	129
10.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35
11.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36
12. 지식재산포인트 제도	138



1

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일람표

(2025. 1. 1. 기준)

특허

• 출원 •

전자	국어 46,000원(임시명세서 출원 포함)* 외국어 73,000원
서면	국어 66,000원 + 가산료** 외국어 93,000원 + 가산료**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56,000원)

** 가산료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심사청구 •

166,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

• 등록 •

설정등록 (1~3년)	매년 13,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2,000원
연차등록	4~6년 매년 36,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7~9년 매년 9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34,000원
	10~12년 매년 216,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9,000원
	13~25년 매년 324,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9,000원

실용신안

• 출원 •

전자	국어 20,000원(임시명세서 출원 포함)* 외국어 32,000원
서면	국어 30,000원 + 가산료** 외국어 42,000원 + 가산료**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25,000원)

** 가산료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심사청구 •

7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 등록 •

설정등록 (1~3년)	매년 12,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000원
연차등록	4~6년 매년 25,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7~9년 매년 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4,000원
	10~12년 매년 1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 심판 •

전자	거절 · 무효 · 정정 · 권리범위확인 등	매건 1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서면	거절 · 무효 · 정정 · 권리범위확인 등	매건 17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 (전자문서) 매건 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천원 가산
(서면) 매건 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천원 가산

디자인

• 출원 •

전자	심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서면	심사	1디자인마다	10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55,000원

* 첨부서류 중 도면을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매건 99,000 / 50,000원)

• 등록 •

설정등록 (1~3년)	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연차 등록	4~6년	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5,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7~9년	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7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10~12년	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14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13~20년	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 심판 •

전자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상표

• 출원 •

전자	1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서면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지정상품가산금 :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지정상품을 자주 사용자인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자) 1상품류 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서면)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등록 •

설정등록	1상품류 구분마다 201,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2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정상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존속기간갱신	• 갱신주납 :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08,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정상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갱신주납 :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08,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정상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자방세 : 9,120원(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심판 •

전자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 · 무효 · 취소 · 권리범위 등	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 매건 250,000원 / (서면) 매건 260,000원

등록신청 시 주요 흐름 사유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 전액(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6세 이상~18세 이하인 사람, 군인 등
- 85% 감면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70% 감면 :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에 대한 공동출원
- 30% 감면 : 중견기업

2) 4년차 ~ 존속기간 특허료 및 등록료

- 50% 감면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전액(100%) 면제 : 전담기관, 전문기관, 사업수행기관(2026.12.31.까지)/디자인은 제외)

* 발명진흥법 제3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지식재산처가 고시

3)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감면

- 30% 감면 : 중견기업
- 추가 20% : 중소기업, 중견기업(2026.2.28.까지)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3)의 경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모든 권리자가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그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 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 감면율을 적용

4) 우선심사신청료(특허)

- 70% 감면 : 중소기업(2027.12.31.까지)

* 사업개시일 3년 이내

5) 권리법위반이 심판청구료(적극)

- 70% 감면 :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 전담조직

6) 이전등록료 ·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정)

- 전액(100%) 면제 : 전담기관, 전문기관, 사업수행기관(2026.12.31.까지)

* 발명진흥법 제3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지식재산처 고시



2

수수료 납부하기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가. 변경·분할 출원 수수료 등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실용신안 150,000원)

2) 변경출원료

① 특허 ⇌ 실용신안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매건 전자 9,000원 / 서면 10,000원

3)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① 특허의 경우 분할출원 1회차 : 신규출원료, 2회차 : 신규출원료의 2배, 3회차 : 신규출원료의 3배,

4회차 : 신규출원료의 4배, 5회차 이상 : 신규출원료의 5배('23.8.1부터 회차 계산)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5.1.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 동일(심사 / 일부심사) 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10,000원 / 서면 20,000원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59,000원 / 서면 69,000원

③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상표)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4) 우선권주장 신청료 / 추가료 : 전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 서면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납부할 필요 없음

5) 재심사 청구료 : 특허 10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

/ 실용신안 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 상표 (기본료) 1상품류구분마다 (전자문서) 20,000원 (서면) 30,000원

(가산료) 보정 후에 보정 전보다 초과하는 상품류마다 (전자문서) 52,000원 (서면) 62,000원

(공통) 보정 후 상품류당 10개 초과 지정상품에 대한 가산금 2,000원



6)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 200,000원 - 실용신안 100,000원 - 디자인 1디자인마다 70,000원
- 상표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나. 보정료

1)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보정서 제출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 임시명세서 보정시 보정서와 첨부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2)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 ① 전자문서 제출 : 특허 매건 71,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실용신안 매건 35,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② 서면 제출 : 특허 매건 91,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실용신안 매건 45,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3) 디자인변경 보정료(1디자인마다)

- ① 단독 ⇌ 관련 동일(심사 / 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상기 보정료와 동일
- ② 일부심사 ⇒ 심사등록출원 변경보정 : 전자 53,000원 / 서면 63,000원

4) 디자인 재심사 청구 보정료(1디자인마다)

- ① 동일(심사 / 일부심사) 출원 보정 : 전자 30,000원 / 서면 40,000원
- ② 일부심사 ⇒ 심사 변경 보정 : 전자 79,000원 / 서면 89,000원

5) 상품류구분, 지정상품 및 이외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14,000원

- 단, ①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시 52,000원, 서면 제출시 62,000원
 - ② 2012.4.1. 이후 출원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

다. 기타 수수료

1) 보완료

- ① 특허(실용신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 주장 보완료 :
전자 18,000 / 서면 20,000

- ②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③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 4,000원 / 서면 14,000원

2) 출원인 변경 신고료

- ① 전자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 ② 상속에 의한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6,500원
- ③ 법인의 분할·합병인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④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6,500원
- ⑤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법정기간 또는 기일변경 신청료

- ① 1회 : 매건 20,000원
- ② 2회 : 매건 30,000원
- ③ 3회 : 매건 60,000원
- ④ 4회 : 매건 120,000원
- ⑤ 5회 이상 : 매건 240,000원

4)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① 1개월 이하 : 20,000원
- ②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 30,000원
- ③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60,000원
- ④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 120,000원
- ⑤ 4개월 초과 : 240,000원

5) 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 / 1개월에 한함)

6) 비밀디자인청구료 : 전자 1디자인마다 18,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7)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전자 1디자인마다 21,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4,000원

8)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



3

수수료 납부하기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가. 권리이전 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매건 40,000원
- ②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③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추가

나.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①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②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다.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라.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매건 72,000원, 통상 매건 43,000원

마. 질권설정등록(실시권·사용권)·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단, 국가기관, 법원 측탁(회생법원)에 의한 처분제한 등록료는 면제)

바. 질권설정등록(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매건 20,000원(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

※ '26.12.31.까지 한시 적용하며, 공동담보인 권리 건수는 권리유형별 각기 기산

사.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제외)·취소·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아.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자.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4

수수료 납부하기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 가. 정정청구료 : 전자 매건 3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 서면 매건 4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

: 전자 매건 26,000원 / 서면 매건 36,000원

※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한 경우 : 면제

나.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전자 매건 142,000원 / 서면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전자 매건 16,000원 / 서면 매건 18,000원

다.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료 : 전자 매건 1,000원 / 서면 매건 1,500원

라.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마.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바.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5

수수료 납부하기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 우송료는 발급서류의 우편송달에 따른 경비에 해당함(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변동)

가. 각종 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및 우송료

- * 첨부물 복사 가산료 : (서면) 매면 100원, (모사전송) 매면 300원
- *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시 무료

나.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및 우송료

- * 첨부물 복사 가산료(발급 서류 10면 초과시) : (서면) 매면 100원, (모사전송) 매면 300원
- *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시 무료

다.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라. 특허(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료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 전자등록증으로 수령시 무료

마.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발급 신청료 : 전자 매건 7,000원 / 서면 매건 9,000원



6

수수료 납부하기

PCT 국제출원 수수료

가. 국제출원 수수료

※ 국제조사기관의 정책에 따라 조사료는 변동될 수 있음('25.1월 기준)

종 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 제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CHF		
출원료	출원서류 30매 초과 시 1매당	*초과매수 X 15 CHF		
조 사 료	한 국	영어 : 1,200,000 국어 : 450,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지식재 산처
	오스트리아	2,713,000		
	호 주	2,000,000		
	일 본	1,289,000		
	싱 가 포 르	2,286,000		
	송 달 료	45,000		

※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할인액 : 300 CHF

※ (한국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 선택시)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나.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 수수료 계산시 유의 :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25.1월 기준)

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4동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313,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Ö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213		
일 본	심사료 JPY 34,000 (일본어 출원) JPY 69,000 (영어 출원)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WIFT Code : SMBC JP JT) 계좌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Japanese Patent Office(IPEA/JP)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34,700		
호 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계좌번호 : 868711229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344		
싱가포르	심사료 SGD 830	송금은행 :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 수신자 명칭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계좌번호 : 003-900067-7 (SWIFT Code : DBSSSGSG)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취급료 SGD 305		

* 호주의 경우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를 호주지식재산처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7

수수료 납부하기

마드리드 이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수수료		납부처
본국관청 출원 (한국 → 해외)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전자출원	매건 5,000원	
		서면출원	매건 15,000원	한국지식재산처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전자출원	매건 3,000원	
		서면출원	매건 13,000원	
	국제출원 (A+B+C 또는 A+D)	기본수수료(A)	흑백표장 653 CHF 색채표장 903 CHF	
		추가수수료(B)	1개류당 100 CHF (3개류 초과 시)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 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기본수수료(A)	300 CHF ※ 표장의 색채구분 없음	
	사후지정신청 (A+C 또는 A+D)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 CHF	국제사무국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기본수수료(A)	653 CHF ※ 표장의 색채구분 없음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A+B+C 또는 A+D)	추가수수료(B)	1개류당 100 CHF (3개류 초과 시)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 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지정국관청 출원 (해외 → 한국)	위임장 보정		서면 : 매건 4,000원	한국지식재산처
	단체/증명 표장의 정관 보정		전자문서 : 매건 14,000원	
	국제등록의 분할	국제사무국 수수료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지식재산처 수수료	(출원) 매건 68,000원 (등록) 매건 73,000원	
	지정상품 보정		매건 10,000원	
	법정기간 연장 및 지정기간연장		1회차 20,000원	
			2회차 30,000원	

* 지정국가 각각의 선언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를 부과하고, 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수수료 대신에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제등록분할-출원-다류지정의 경우, 동일류에 지정상품 표시의 변경없이(삭제포함) 분할하는 경우 매건 13,000원



8

수수료 납부하기

해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가.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처
송달료	전자출원	5,000원	한국 자식재 산처
	서면출원	15,000원	
기본료	최초 1디자인	397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공개료	1 도면 마다	17CHF	국제사무국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면마다(서면출원 경우)	150CHF	
추가수수료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2CHF	
지정 수수료 <small>※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금액</small>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1 디자인	42CHF
		추가 디자인 마다	2CHF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1 디자인	60CHF
		추가 디자인 마다	20CHF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1 디자인	90CHF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개별지정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나. 국제등록 갱신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처
기본료(A)	최초 1디자인	200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7CHF	
지정 수수료	표준지정 수수료	1 디자인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다. 국제등록 변경 신청

종 류	금 액		납부처
명의변경	144CHF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국제등록	144CHF	국제사무국
	추가 국제등록 마다	72CHF	
국제등록의 포기	144CHF		
국제등록의 감축	144CHF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144CHF		
견본 사진 신청	57CHF		



9

수수료 납부하기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2025. 1. 1. 기준)

가. 감면 및 면제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4년 ~ 존속기간분의 특허(등록)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중소기업,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스타트업)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방법

출원 · 심사청구 · 우선심사청구 · 권리 설정등록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다.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 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발명 (고안 · 창작) 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 · 중 · 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없음
6.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 유의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2.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절차별로 각각 연간 5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며, 1출원에 특허 · 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임

라. 85%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 면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발명(고안 ·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 음
2. 65세 이상인 사람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유 의

-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30% 감면

마.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인	• 발명(고안 ·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 음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시 3년간 중소기업 증명서 첨부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직전 3개년도) 표준손익계산서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 유 의

-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중소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30% 감면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신청경로) 상기 인터넷 주소 접속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처) 일반상담 1357 / 온라인 자료제출 등 문의 02-3215-2674

바.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결과물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 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공공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 등')이 연간 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 등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연구기관(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2호), 특정연구기관(3호), 국공립학교(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 개발 관련 법인·단체(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근거 법률 - 연구개발 관련 법인 여부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조례, 정관 등 - 국가 등에서 자본금 등을 출자출연한 사실에 대한 증빙
3.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사.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감면대상 아님

아. 4~9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26.2.28.까지)

- 중소기업(70% 감면), 중견기업(50% 감면)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2.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자. 4년~존속기간분의 특허(등록)료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기술신탁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증명서류<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차. 4년~존속기간분의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p>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p> <p>* 제출시 3년간 중소기업 증명서 첨부면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3개년도) 순익계산서 2) (직전 3개년도) 표준순익계산서 3)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3. 공공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 등')이 연간 연구비의 1/20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 등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연구기관(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2호), 특정연구기관(3호), 국공립학교(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근거 법률 - 연구개발 관련 법인 여부 및 기술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조례, 정관 등 - 국가 등에서 자본금 등을 출자·출연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
4.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없음

카. (특허)우선심사신청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27.12.31.까지)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중소기업 ※ 7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 사업 관련 감면 안내 ('26.12.31.까지)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실용신안·한정)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4년~존속기간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전문기관		
3. 사업수행기관		

파.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출원 등을 할 당시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서식(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관계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

* 구비서류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1통,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대리인이 대리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통장계좌사본1통



10

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가. 출원료·등록료·수수료 납부요령

- 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서류 접수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로 납부
- ② 우편으로 요금 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③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10년분을 일괄납부 하거나,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에 5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5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음



나.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 ① 반환사유발생 통지 : 납부자에게 과·오납, 불수리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
- ② 납부자 등의 반환신청
 -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서면신청 시에는 반환신청인의 예금 계좌사본을 첨부)
 - i) 온라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 ii) 서면(팩스, 우편) - 반환 안내서와 함께 동봉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반홷新청서 작성 후 팩스(042-472-3453) 발송 또는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로 우편 발송
 - * 특허로 >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면신청 >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반환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 '22. 10. 18. 일자에 시행된 개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반환청구기간이 연장됨(3년→5년)
 - ㉢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시 별도 반환신청 없이 정정신청 기한(1년)이 지난 다음날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반환
 - * 온라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반환신청 > 반환금 기본계좌 관리
- ③ 반환 : 결제한 카드의 승인취소(카드취소 기한(1년) 내 반환신청 시) 혹은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11

수수료 납부하기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가. 수수료 자동납부제도의 의미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 각종 특허 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대신 지식재산처에 사전 등록한 금융기관(농협,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시키는 제도

나. 수수료 자동납부 대상 수수료

1) A Type(1회 자동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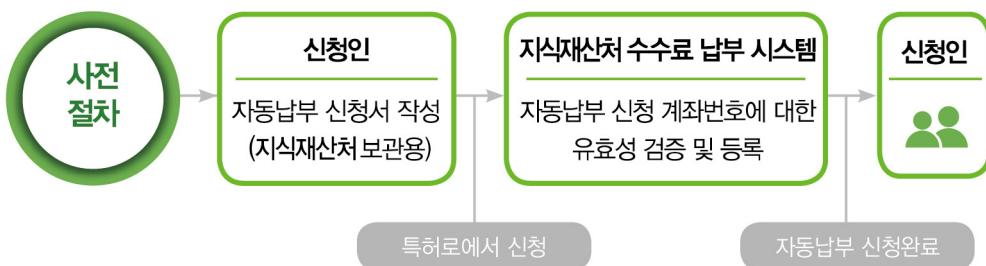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 납부하는 경우

2) B Type(매년 자동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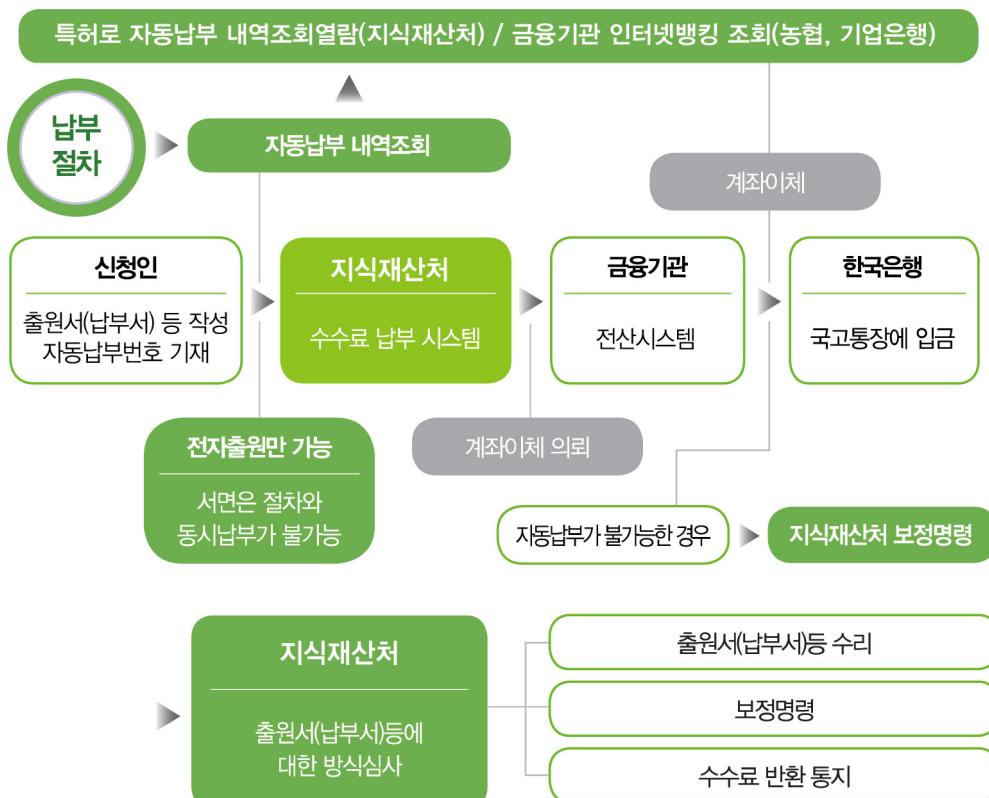
제4년차로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 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 납부하는 경우

다. 수수료자동납부 절차

1) 사전절차 : 「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사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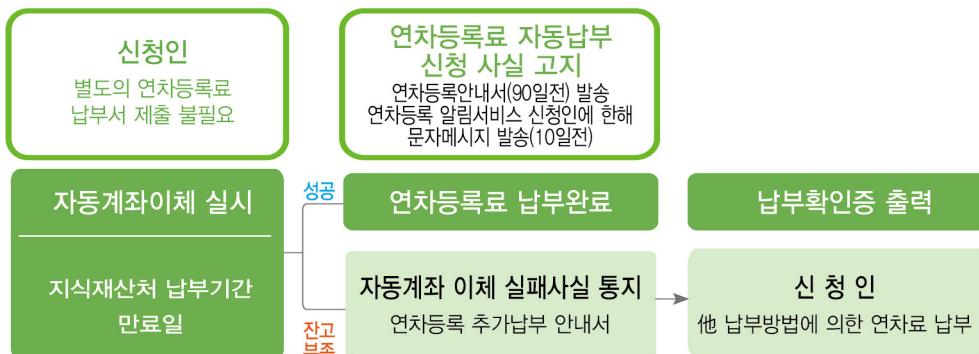


2) A Type(1회 자동납부) 특허 수수료의 납부절차



※ 잔고 부족시 전액인출하지 않음

3) B Type(매년 자동납부) 연차등록료의 납부절차



※ 잔고 부족시 전액인출하지 않음

※ 연차등록료의 경우 매년 자동납부(B Type)이외에 납부서 제출에 의한 자동납부(A Type)도 선택가능

※ (B Type) 권리이전으로 인해 자동납부를 신청한 권리자와 자동납부시의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 자동납부 신청은 취소 처리됨



12

수수료 납부하기

지식재산포인트 제도

가. 지식재산포인트제도의 목적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창출·활용을 장려 및 지원하여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비율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한 자

무상개방 형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비율/포인트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 등의 실시권 설정	납부한 특허료·등록료의 50%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등 무상 이전	(특허) (실용·디자인)	30만 포인트/건(1회) 5만 포인트/건(1회)

※ 다음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해 무상 개방된 건
- 나.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고, 권리 제공자와 「국세기본법」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다. 실시권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마. 실시권 또는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함

- 2) 특허키움 리워드(전년도 특허창출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

부여대상	특허청출비용 구간	부여비율
개인 중소기업	30만원 초과 ~ 100만원이하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 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10
	100만원 초과 ~ 200만원이하	100분의 20
	200만원 초과 ~ 400만원이하	100분의 30
	400만원 초과 ~ 800만원이하	100분의 40
	800만원 초과	100분의 50

3)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대리인 제외), 중소기업이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최초 1회 부여 / '26.12.31.까지)

4)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대리인 제외), 중소기업이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6.12.31.까지)

자동납부 횟수	3회	5회	10회	비 고
지식재산포인트	1만	2만	3만	'20.7.1. 이후, 신규 자동납부 개시건 대상 (최초 1회 부여)

5)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특허로를 통해 모바일 연차등록안내서비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안내서비스 포함)를 신청하면서, 우편안내문 발송을 취소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최초 1회 부여 / '26.12.31.까지)

6)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대리인 제외)이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최초 1회 부여 / '26.12.31.까지)

7)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부여대상	적용 기준	비 고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전년도에 납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40	'26.12.31.까지 선정된 기관으로 한정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대상)
	전년도에 납부한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등록)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20	

다. 신청방법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비율」중 1)에 해당하는 신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신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특허료, 등록료가 납부된 건에 한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비율」중 2) ~ 7)에 해당하는 신청
 - 별도신청 불필요

라. 지식재산포인트 사용 방법

-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10년이며, 적립된 포인트로 특허료, 등록료 및 기타 수수료 납부 시 사용 가능(단, 국제출원료는 제외)
 - i) 1포인트는 1원 :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금액만큼 차감
 - ii)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절차 : 「특허로 홈페이지」→「수수료 관리」→「수수료 납부」→「온라인 납부」포인트를 사용할 '특허 수수료'를 선택한 후 사용할 포인트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

마.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042) 481-8756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 042) 481-8755, 8552(PCT·마드리드·해이그 수수료)

PART

03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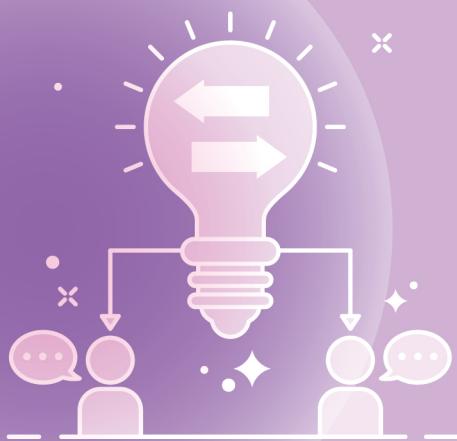
제1절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143
제2절	지식재산 지원 시책	149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159
제4절	기타 서비스별 유용한 정보	173



PART

03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제1절 ...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1.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144
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145
3. 공익변리사센터 운영 147



1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가. 주요업무

- 출원·등록·심판 관련 서류 접수
- 등록증·우선권증명서류 등 교부, 각종 제증명·서류철 복사 발급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상담

나. 주소 및 대표전화

-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 주소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민원동 1층(둔산동)
 - 대표전화 : ☎ 042) 481-5221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주소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5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대표전화 : ☎ 02) 3458-2200





2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가. 설립목적

특허넷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권리 창출 및 권익보호 지원

나. 주요업무

[수신]

- 대표번호(1544-8080)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
 - 국내 지재권 제도 및 절차 상담
 - 국제출원(PCT, 마드리드, 헤이그) 제도 및 절차상담
 - 특허넷 및 전자출원 SW 사용방법 상담
 - 카카오톡,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채팅상담서비스
 - 국내 지재권 제도 및 절차 상담
 - 특허넷 및 전자출원 SW 사용방법 상담
 - PC, 모바일을 이용한 챗봇상담서비스
 - 국내 지재권 제도 및 절차 상담
 - 특허넷 및 전자출원 SW 사용방법 상담
- ※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s://kipo.go.kr/kcall/>

[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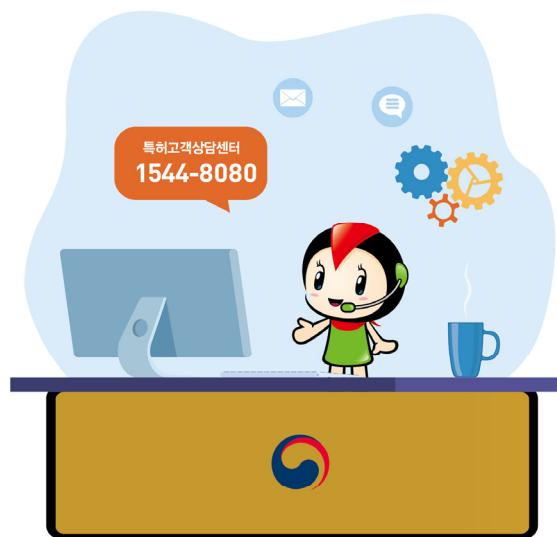
- 전자출원 오류 조치를 위한 PC원격상담서비스
- 상담완료 이후 추가안내를 위한 해피콜서비스

[기타]

- 신규설정등록, 연차등록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발송(엔젤콜)서비스
- 특허고객상담사례집, FAQ

다. 상담문의

-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상담시간: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 www.koip.go.kr/kcall





3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공익변리사센터 운영

가. 설립목적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나. 주요업무

- 서류작성 지원
 - 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
 - 의견서, 보정서, 이의신청 답변서 등 출원 관련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
 -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침해사건 소송비용 지원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 민사소송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 방문자, 전화, 온라인, 우편, 지역순회 상담, 설명회

다. 상담문의

- ☎ 02) 6006-4300, 상담시간: 9시~18시(토,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 www.pcc.or.kr

PART

03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제2절 ...

지식재산 지원 시책

- | | |
|-------------------|-----|
| 1.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조회 | 150 |
| 2. 지식재산처 세부사업 요약표 | 151 |
| 3. 지식재산처 제도 및 법령 | 158 |



1

지식재산 지원 시책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조회

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접속(<https://www.moip.go.kr>)

☞ ‘정책/업무’ → ‘지원시책’ → ‘지원사업 조회’ 클릭

②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체크 후 검색



2

지식재산 지원 시책

지식재산처 세부사업 요약표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 창출	종합상담	특허넷 시스템 이용방법 및 오류조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절차 등 특허행정 전분야에 대한 상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개인)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03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34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구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 중소 기업이 강한 지재권 기반의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종합 지원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498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7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이 R&D 효율성을 높이고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46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02) 3287-4202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표준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대학·공공(연)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전략팀 042) 481-396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략기획표준특허팀 02) 3287-4395 3287-4349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 창출	자식재산 경영진단 및 자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	자식재산처 자식재산창출활용과	042) 481-540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	042) 251-1766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자식재산처 자식재산창출전략팀	042) 481-396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동향지원팀	02) 3287-4343
	자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자식재산처 자식재산창출활용과	042) 481-8639
	생활발명코리아	자식재산처 자식재산거래과	042) 481-5763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02) 538-2710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	자식재산처 자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2) 481-5137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학사팀	02) 6915-1495 6915-1465
	지식재산 긴급지원	자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498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2
	산업재산 진단기관 지정	자식재산처 자식재산창출전략팀	042) 481-505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02) 3287-4250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 활용	특허로 제품혁신 (舊 IP-C&D 전략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3554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팀	02) 3459-2846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5087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4팀	02) 2156-2459
	지식재산 거래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595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 3459-2786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8312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36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이 되고,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개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595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 3459-272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지식재산처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개척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5724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팀	02) 3459-2807
공공IP 사업화 지원	대학·공공(연)에 대한 자식재산 경영 진단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경영 역량 향상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제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042) 481-540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팀	02) 3287-4353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전략팀	042) 481-399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성과분석팀	02) 3287-4348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보호	영업비밀 보호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영업비밀보호센터	042) 481-3573 1666-0521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 협력총괄과	042) 481-391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 481-599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 6196-2051 2183-589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042) 481-353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02) 2183-5870
	특허분쟁위험 경보시스템 운영	지식재산처 첨단산업분쟁대응과	042) 481-528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02) 6196-2040
지식재산금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042) 481-8227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1670-9779
	지식재산공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042) 481-8639
		지식재산공제 안내 클센터	1544-1120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1658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38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8312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47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 교육·컨설팅	지식재산(IP) 디지털교육 사업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 601-4312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실	02) 3459-2767
	지식재산 교육 중점대학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545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 3459-2806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3572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 3459-2913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3572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 3459-2911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3572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 3459-2771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042) 481-3923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 3459-2847 459-2793
특허지원 상담창구 운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 해결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498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2 3459-2838
공익변리사센터 운영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재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042) 481-3513
		공익변리사센터	02) 6006-4300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지식재산의 활용 확산과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방법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042) 481-5784
		한국특허정보원	02) 6915-1551

분 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 식 재 산 관 련 행 사	발명의 날 행사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313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792 3459-2794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 481-8313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792 3459-2794
	여성발명왕 EXPO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042) 481-5763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02) 538-2710
	IP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2) 481-5137
		한국특허정보원	02) 6915-1495
	D2B (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5138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5138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 3459-2818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5924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실	02) 3459-2916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 481-5924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실	02) 3459-2741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관련행사	특허기술상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우수발명을 발굴하고 발명자에게 시상하여 수상발명의 사업화를 지원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042) 481-3567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IP리그)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의 지식재산처 예선대회(IP리그)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출원한 (예비)창업자(팀)를 선발하여 범부처 사상(총상금 13.8억원, 대통령상 등)과 중기부 및 지식재산처의 창업·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후속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팀	042) 481-3554 02) 3459-2814
기타지원제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42) 481-3923 02) 3459-2847 3459-2793
	지식재산 경영인증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042) 481-8653 02) 3459-2838
기타지원제도	수수료 감면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 481-8756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042) 481-8180
	특허심판-국선대리인 제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042) 481-5484



3

지식재산 지원 시책

지식재산처 제도 및 법령

법령 및 제도		부서명	전화번호
심사	특허법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042) 481-5736
	실용신안법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042) 481-5736
	상표법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042) 481-5981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042) 481-5766
심판	심판제도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042) 481-5917
수수료	수수료제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 481-8336
출원/등록	출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	042) 481-3548
	등록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042) 481-5233
국제출원	PCT(국제특허) 출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042) 481-8770
	국제상표, 국제디자인출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042) 481-5194, 8552
지식재산권 보호	보호법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042) 481-5899

제3절 ...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 | | |
|---------------|-----|
| 1. 출원 및 심사 절차 | 160 |
| 2. 국제출원 절차 | 162 |
| 3. 등록 절차 | 164 |
| 4. 심판 절차 | 167 |
| 5. 전자출원 절차 | 170 |



1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출원 및 심사 절차

Q1

출원 후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후 심사까지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별 심사기간(23년 기준)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약 22개월	- 일부심사 :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심사 : 출원일로부터 7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4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8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 모든 권리에 있어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Q2

이의신청제도는 무엇인가요?



상표법에서의 이의신청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상표법 제60조)이며,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이의신청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 등록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하여 디자인등록 취소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

- 상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누구나 가능
- 시 기 :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 방 법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
- 수수료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및 시기 : 누구나 가능(디자인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까지).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는 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단, 등록 공고일 1년 이내)
 -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
- 방법 :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
- 수수료 : 1디자인마다 50,000원

Q3**출원인 정보(주소, 명칭 등)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와 정보변경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08년 이전 등록된 건은 정보변경 진행 후 등록번호별로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와 정보변경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Q4**미성년자가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출원 절차 :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 출원서에 [법정대리인]란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제출서류 생략정보 입력으로 생략 불가)
 - 법정대리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첨부서류
 -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중심으로 발급)



2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국제출원 절차

Q1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발명의 설명 등 보정은 크게 19조 보정 및 34조 보정으로 구분되며, 세부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19조 보정 (청구범위 보정)	34조 보정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
시 기	아래 기간 중 늦은 때 - 조사보고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 우선일로부터 16개월 ※ 부작성 선언서가 나온 경우 보정 불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보정범위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제출서류	- 보정에 관한 서한(letter) 1부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 1부 (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1부 (선택사항)	-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2부 (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letter)1부
제출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제출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
횟 수	1회	별도 제한 없음
보정결과	국제공개 및 지정관청에 송부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 사항을 기록 및 보정서를 첨부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 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택관청에 송부

Q2**PCT 국제출원인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단계에서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인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
 -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양수인 신청 시)
 - 양수인 위임장 1통(대리인이 절차 진행 시 국제출원 위임대리인만 가능)
 - 변경전 출원인의 미제출된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있는 출원이면서, 변경전 출원인 중 미제출된 위임장이 존재할 경우)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홈페이지(www.moip.go.kr)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제출기간 :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 이내 제출 권장(도달주의)

Q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내단계 진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 제201조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한국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 진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고 국제출원언어를 한국어로 한 경우는 국내서면 제출 기간 내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 국어 번역문은 생략합니다.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 시 국어번역문 연장 신청한 다음,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 번역문 제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국내단계 진입시에만 가능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국제출원 시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홈페이지(www.moip.go.kr)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수수료납부 : 제203조 서면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 납부

※ 특허로っぽ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출원 관계 수수료 참조



3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등록 절차

Q1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등록료를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가산료 있음)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만, 2014년 6월 11일 이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디자인의 경우 2016년 4월 28일 이후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 등록료)’에 회복신청 원인을 기재하고 정상납부기간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신청기간까지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회복할 수 없고 소멸된 권리를 다시 등록할 수도 없으므로,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 기간 내에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권리자 모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공동권리자 중 1인만으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자가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Q3

등록증(특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설정 등록되면 그 증서로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변경에 의해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의 진행 없이 그 등록권리자(양수인)에 대한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권리를 한 장의 신청서로 한 번에 이전하려는 경우(병합신청)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과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이용서식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제증명서식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등록)증 재발급
- 첨부서류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출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온라인	매건 5,000원
서 면	매건 6,500원
전자등록증	무 료

Q4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은 언제 하나요?



'08.1.1.부터 특허고객번호의 사용을 등록단계까지 확대함에 따라 등록된 권리를 특허고객번호로 통합관리하고,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만으로 등록명의인이 같은 권리에 대한 등록명의인 표시를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07.12.31. 이전에 등록된 건 중 등록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현재 표시로 바로잡고자 할 때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과 함께 진행)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등록명의인이란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를 말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란 등록명의인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이용서식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키워드 검색)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 첨부서류

재내자	개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초본)
	법인	증명서류 필요하지 않음
재외자 ※ 개인, 법인 동일		변경 전·후 사항이 기재된 법인(국적)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또는 주소 및 명칭 변경선언서 (공증) 및 번역문

- 신청인 : 특허(등록)권자, 실시(사용)권자, 질권자
- 신청 대상 : '07.12.31. 이전에 설정 등록된 권리



4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심판 절차

Q1

특허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실시자의 대응방법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2.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3. 특허(등록)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법원에 청구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기본 판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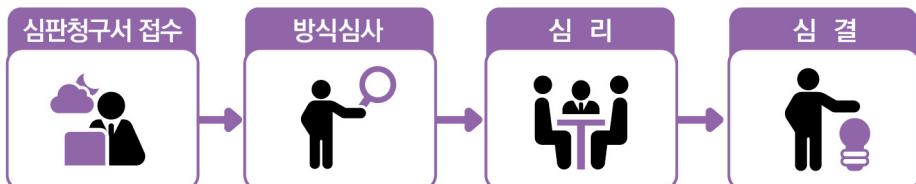
Q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심판청구 기간 : 등록된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대상 :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서식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 심판청구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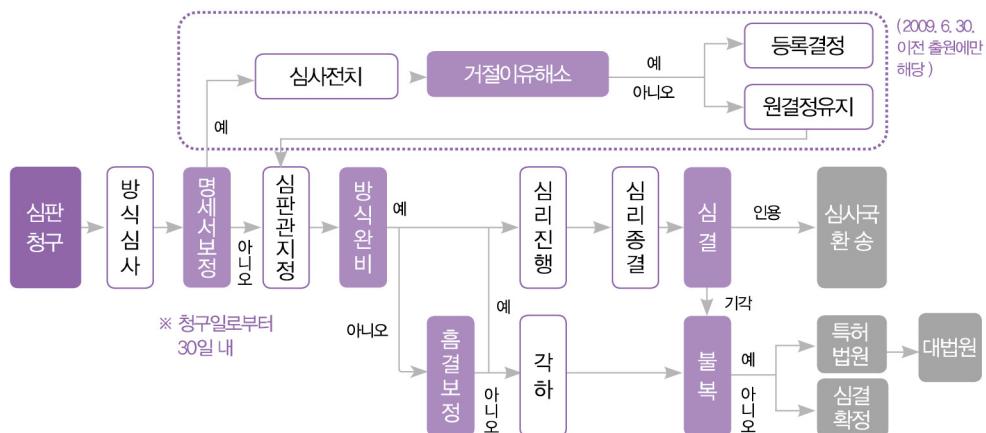


Q3

심판청구를 했는데 심판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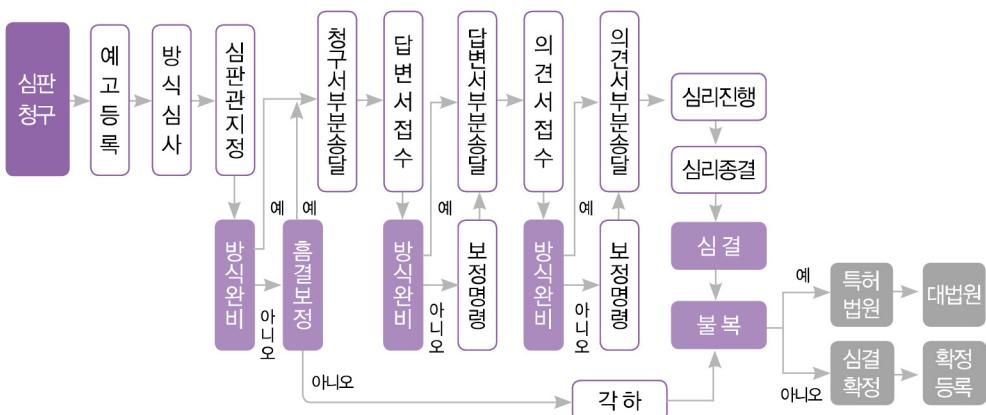
- !** 심판청구를 하여 심결 받기까지 심판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심판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우선심판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 소요기간으로 사건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09.6.30. 이전 출원)는 특허 · 실용 신안 ·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5

지식재산권 관련 알기 쉬운 Q&A

전자출원 절차

Q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은 특허로 홈페이지 또는 (통합)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작성한 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방법

- 정보변경 신고 메뉴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로그인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 변경 신청
※ 변경(경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ATT, JPG, TIF, PDF파일 가능

- 제출결과조회 메뉴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등록 및 정보변경 신청결과 조회에서 수리여부 확인

-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방법

- 정보변경 신고 위치 :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 공통서식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구분항목 :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출원·심사·등록 절차】서식 불러오기
※ 변경(경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ATT, PDF파일 가능

- 서식제출 방법 : 작성 완료 후 상단 (전자)문서 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절차 진행 → 접수번호 확인

- 제출결과조회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 조회에서 수리여부 확인

Q2**출원사실증명원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출원사실증명원은 해당 출원서가 수리된 이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 → 출원사실증명신청 → 신청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사실증명원 출력 방법 : 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증명서수신함에서 발급 문서 확인 및 인쇄

Q3**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제출한 서류의 사본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증명서발급”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서류 발급 신청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클릭 →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류사본) → 발급 대상 서류철의 발급신청 클릭 후 로그인 → 서류등·초본교부신청 작성 후 신청 → 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증명서수신함에서 발급 문서 확인 및 인쇄

※ 다운로드 형태에 따라 ZIP / PDF 선택 다운로드 가능, ZIP파일로 다운받은 경우 전자출원SW중 ‘통지서열람기’를 통해 내용 확인

-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비회원 서류 발급 신청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 → 서류철복사(비회원) → 서류철복사신청(비회원) → 발급 대상 서류철의 발급신청 → 서류등초본교부신청(비회원) 작성 후 신청 → 수취방법이 온라인 수령인 경우 서류철수신함(비회원)에서 발급 문서 확인 및 인쇄

※ 다운로드 형태에 따라 ZIP / PDF 선택 다운로드 가능, ZIP파일로 다운받은 경우 전자출원SW중 ‘통지서열람기’를 통해 내용 확인

※ 통지서열람기는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 설치에서 다운받아 설치

Q4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등록원부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 → 신청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등록원부 발급 신청 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클릭 → 등록원부/등록서류복사 → 등록원부 교부신청 → 발급신청 클릭 후 로그인 → 등록원부교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증명서수신함에서 발급 문서 확인 및 인쇄
-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비회원 등록원부 발급 신청 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등록원부접수 발급(비회원) → 등록원부신청(비회원) 클릭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등록원부수신함(비회원)을 클릭하여 검색대상 주민등록번호, 문서분류 선택 후 검색 → 발급된 등록원부 발송번호 클릭하여 등록원부 확인 및 인쇄

Q5

특허로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증명수수료를 포함한 특허 수수료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를 이용하여 납부대상을 조회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인터넷 납부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 납부 → 로그인 후 납부대상 검색(특허수수료, 연차등록료, 증명신청료) 선택 후 검색 → 납부대상 수수료 선택 후 납부 방법(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을 선택하여 납부

※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

제4절 ...

기타 서비스별 유용한 정보

1. 특허로(www.patent.go.kr) 이용 방법 174
2. 통합서식작성기(PKEAPS)에서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179
3. 키프리스(www.kipris.or.kr) 이용 방법 182



1

기타 서비스별 유용한 정보

특허로(www.patent.go.kr) 이용 방법

가. 특허로(www.patent.go.kr)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사용등록 절차

① 특허로에 등록할 공동인증서 준비

☞ 등록 가능한 공동인증서의 종류

- 1)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거래법용 공동인증서
- 2)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은행용 공동인증서
- 3)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지식재산처 전용 공동인증서

② 특허로에서 인증서 사용등록 진행

- 1)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 접속 → ‘특허고객등록’ 클릭



- 2) ‘인증서 사용등록’ 클릭



- 3) 특허고객번호 입력 → ‘신청 클릭’

※ 특허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조회’를 클릭하여 개인(법인)의 이름(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검색

처음이신가요 · 팻봇상담 · 지식재산탐구생활

로그인 ·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관리 · 화면크기 ↔

특허로 출원 심판

My특허로 신청/제출 조회/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지원 Q

인증서사용등록

인증서사용등록 PCT인증서

“특허고객번호신청”후 발급받은 특허고객/대리인 번호

4 - 2021 - 012345 - 1 특허고객번호조회

제작상 신청

4) ‘등록’ 클릭

처음이신가요 · 팻봇상담 · 지식재산탐구생활

로그인 ·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관리 · 화면크기 ↔

특허로 출원 심판

My특허로 신청/제출 조회/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지원 Q

인증서사용등록

인증서사용등록 PCT인증서

로그인하셨습니다.

로그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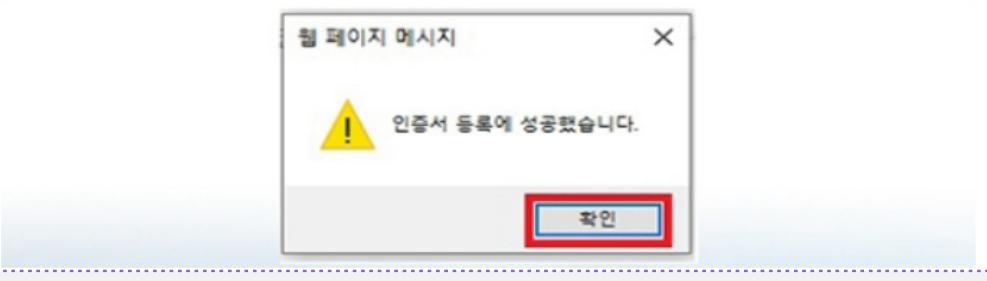
공동인증서 PCT인증서

설명	설행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인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주),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주), 한국전자인증(주)에서 발급 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등록 등록취소

5) ‘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 저장위치 선택 → 사용할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6) ‘인증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팝업 메시지에서 ‘확인’ 클릭



나. 국내법인의 특허로(www.patent.go.kr) 공동인증서 사용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재 절차

※ 법인이 특허로에서 공동인증서 사용등록 신청시 ‘신원확인 중 에러발생’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 ▶ (원인) 공동인증서에 포함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특허고객번호에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누락된 경우
- ▶ (조치)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 및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특허고객번호에 등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또는 누락된 사업자등록번호 신규 등록

* 증명서류 제출방법 : 지식재산처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작성

1)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 경로 :**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 접속 →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식 키워드 검색’창에 ‘고객’ 입력 후 검색 클릭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다운로드

The screenshot shows the Patent Office website's download section. At the top, there are links for '로그인' (Login), '특허고객등록' (Patent Customer Registration), '민원서관리' (Case Management), and '화면크기' (Screen Size).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service icons: '국내출원신청' (Domestic Filing), '제출결과조회' (Submission Result Inquiry), '통지서수신함' (Notification Letter Reception Box), '특허보관함' (Patent Deposit Box), '증명서발급신청'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Origin), '증명서수신함' (Notification Letter Reception Box), '수수료납부' (Payment of Fees), '심사처리상황' (Review Status), and '즐겨찾기 설정' (Bookmark Setting).

공지사항

- [공지] 특허로 화면 오류 시 조치방법 안내
- [공지] 우선심사 제도 변경사항 안내(24.1.1.~)
- [공지] 특허로 및 웹출원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 [주기공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2023.11.29)
- [알림] '특허로 등의 정수규칙' 일부개정(23.8.1시행) 주요 내용

웹작성/제출

On the right side of the 'Web Writing/Submission' section, there is a list of download links:

- 민원서식다운로드 (Download Link)
- 전자화결과 수신함 (Email Receipt)
- 본류코드검색 (Search by Main Code)
- 영세서작성같한 유용한Tip (Useful Tips for Small Business)
- 모의출원 (Mock Application)

 Below this is a button labeled '전자등록증 신청 및 수신함' (Apply for Electronic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Receipt Box) and another labeled '영세서 제출파일(XML)변환' (Convert Submission File (XML) for Small Business).

민원서식

The 'Minwon Seok' section shows a search bar with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nter search term.) and a search icon. It includes links for 'ENGLISH', social media icons, and 'KIPRIS'.

민원서식

The 'Minwon Seok' section displays a sidebar with categories like '고객상담', '심사관 면담', '국민 신고', '특허청 정부혁신', '국민신문고 정책 참여', '안전보건', '민원제도 개선', '민원서식', and '기타 참여'. The '민원서식' section is currently selected.

In the main content area, there is a search form for '서식 키워드 검색' (Search by Document Type Keyword) with fields for '고객' and a '검색' (Search) button. A red box highlights the '검색' button.

Below this, there is a table titled '서식명' (Document Name) with columns for '서식번호' (Document Number), '파일' (File), and '작성예제' (Sample Document). It lists two entries:

-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 - 정정신고서

 A red box highlights the second entry.

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작성방법

【구 분】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특허고객번호 정정

【제출인】

- 【성명(영칭)】 해당 법인 명칭 기재(예 : 주식회사 특허)
- 【특허고객번호】 해당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기재(예 : 1-2021-012345-1)
-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대리인】
- 【성명(영칭)】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항목 기재하지 않음
- 【대리인번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항목 기재하지 않음
- 【포괄위임등록번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항목 기재하지 않음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기재하지 않음

【변경(경정, 정정)내용】

- (【변경(경정, 정정)항목】)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경정, 정정)전】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기재하지 않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변경(경정, 정정)후】 등록할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예 : 123-81-45678)

【변경(경정, 정정)원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인증서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도
제출인(대리인) 법인 명칭 기재 (서명  인)

※ 국내법인인 경우 서명 불가하며,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도장과 같은 도장을 날인하거나
등록된 도장을 모르는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② 증명서류 준비

- 1)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에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도장이 아닌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것) 1통

③ 지식재산처에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와 증명서류 제출

- 1) (팩스) 작성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팩스로 발송
팩스번호 : 042-472-0684
※ 팩스 발송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단에 연락받을 수 있는 법인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 2) (방문) 작성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증명서류,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식재산처 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
 - 3) (우편) 작성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지식재산처 대전으로 등기 발송
☞ 지식재산처 대전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④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수리 후 인증서 사용등록 진행



2

기타 서비스별 유용한 정보

통합서식작성기(PKEAPS)에서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특허로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등록절차 진행

- 1) 금융기관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 준비
- 2) 특허로(www.patent.go.kr) 접속 →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 사용등록
- 3) 통합서식작성기(PKEAPS) 다운로드 및 설치
 - ☞ 특허로 사이트 접속 → 전자출원 SW다운로드 → ‘통합서식작성기’ 다운로드 클릭

② ‘①-3’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한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③ 제출하려는 서식 작성 및 저장

④ 전자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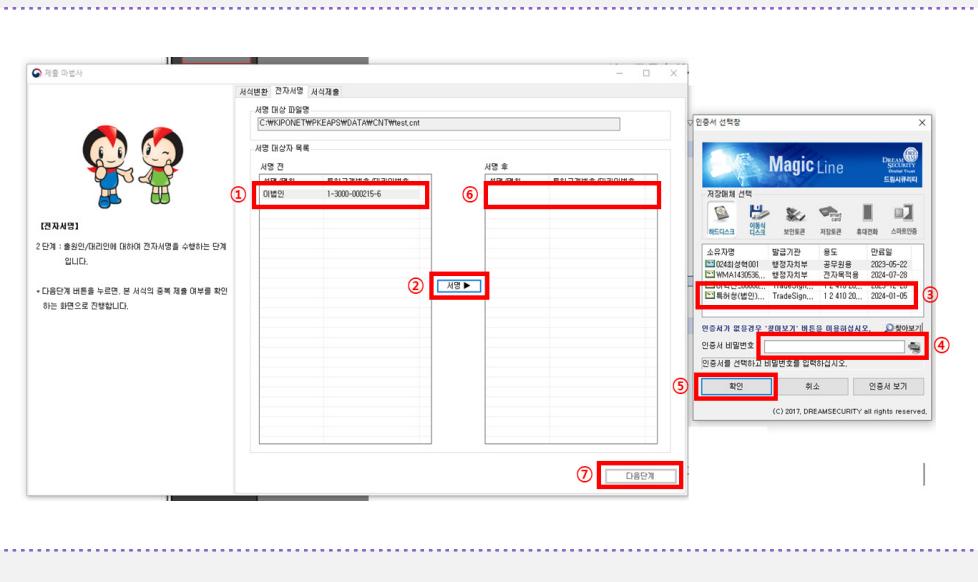
- 1) 1단계 : ① ‘문서제출’ 클릭 → ② ‘제출 마법사’ 팝업창이 열리면 ‘제출문서 생성’ 클릭



- 2) 1-1단계(생략 가능) : ① 팝업창 ‘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② ‘다음단계’ 클릭
 ※ 로그인 되어있을 경우 바로 ② 다음단계 클릭



- 3) 2단계 : ① 서명정보란 왼쪽의 정보 클릭 → ② ‘서명’ 클릭 → ③ 인증서 선택창에서 등록된 인증서 선택 → ④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⑤ ‘확인’ 클릭 → ⑥ 서명정보란 왼쪽의 정보가 오른쪽으로 이전됨 → ⑦ ‘다음단계’ 클릭



4) 3단계 : ① ‘중복제출 여부 확인’ 후 ② ‘다음단계’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Seokchon' software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details:

- Top Left:** '제출 마법사' (Submission Wizard) logo.
- Top Bar:** '서식변환', '전자서명', '서식제출' tabs. The '서식제출' tab is active.
- Left Panel:** A cartoon illustration of two characters, one pointing at the other.
- Section Title:** [중복제출 확인]
- Text Area:**
 - '제출일자', '발행의 명칭', '제출 서류 코드'가 등록하고 접수일자가 [오늘]인 데이터가 이미 있을 경우 [중복제출]으로 표시됩니다.
 - ※ 없을 경우에는 [중복아님]으로 표시됩니다.
 - 제출하시는 서류에 [중복제출]이 있을 경우 접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미 접수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아님]: 금일 접수된 문서중에 동일한 제출자, 서류명이 없습니다.
- Bottom Right:** '다음 단계' button.
- Table:** A table showing submission details.

번호	참조번호	서류명	명칭	중복여부
1		상표등록출원서	제30류	① [중복아님]

5) 4단계 : ‘온라인 제출’ 클릭

The screenshot shows a Windows application window titled '제출 마법사' (Submission Wizard). The main area displays a form for a submission. On the left, there are two cartoon characters, a boy and a girl, pointing towards the form. The form fields include:

- 제출내용
[KEAPSB전] P1.2.2
- [제출인]
[제출인번호] 1-3000-000215-6
[제출인성명] 이법인
- [제출부록]
[파일명] test.cnt
[파수등록구] A0601
[PCF서식구분]
[문서구분] 40
[서류코드] 401101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서류구분] 상표등록출원
[상세구분] 상표
- [사건번호]
[사건번호]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심판종류]
[접수발급번호]
[증조번호]
[대표등록인번호] 1-3000-000215-6
[대표출원인성명] 이법인
[출원인수] 1
[대표대리인번호]
[지정변경사]
[발명의 명칭] 제38류
[심사청구여부] 0
[조기공개여부] 0

Below the form, the '제출파일명' field contains the path 'C:\WIKIPONET\WPKEAPS\data\submit\test.zip'. The '진행상태' section shows a progress bar at 100% completion, with the status '온라인 제출' highlighted by a red box.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three buttons: '전자작기록매체 제출서 인쇄', '닫기', and another button also highlighted by a red box.



3

기타 서비스별 유용한 정보

키프리스(www.kipris.or.kr) 이용방법가. 키프리스(www.kipris.or.kr)란?

- 대국민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국내 및 해외(28개국)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검색기능 외 다양한 부가기능
 - 검색식 메일링서비스, 공보발간 예고서비스,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기계번역 서비스, 온라인다운로드, 검색 통계 시각화서비스 등 부가기능 제공

나. 키프리스 검색 요령

구 분	요 령				
특허·실용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하여 검색 시 동일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문헌을 편리하게 검색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물품의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한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이용하면 검색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table><tr><td style="background-color: #e6eaf2; padding: 5px;">물품명칭</td><td style="background-color: #e6eaf2; padding: 5px;">국제분류</td></tr><tr><td></td><td> 01분류: 식품 02분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32분류: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td></tr></table></div>	물품명칭	국제분류		 01분류: 식품 02분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32분류: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물품명칭	국제분류				
	 01분류: 식품 02분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32분류: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상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명칭이 동일·유사한 경우라도 상품분류의 동일·유사 여부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상표명칭과 상품분류를 병행하여 검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table><tr><td style="background-color: #e6eaf2; padding: 5px;">상표명칭</td><td style="background-color: #e6eaf2; padding: 5px;">상품분류</td></tr><tr><td>식별력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소리, 외관, 의미 등이 유사한 키워드로 확장하고,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td><td>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용도와 원자료를 기준으로 45개 분류로 나눈 것으로 지정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td></tr></table></div>	상표명칭	상품분류	식별력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소리, 외관, 의미 등이 유사한 키워드로 확장하고,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용도와 원자료를 기준으로 45개 분류로 나눈 것으로 지정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상표명칭	상품분류				
식별력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소리, 외관, 의미 등이 유사한 키워드로 확장하고,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용도와 원자료를 기준으로 45개 분류로 나눈 것으로 지정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PART

04

불임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184
2. 지식재산처 지원 기관 현황 198
3.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200
4. 주요 국가 지식재산처 인터넷 주소 201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202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204
7.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205





1

불 임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기재요령

순번	서식명	법령별 서식번호	작성예제
1	명세서 등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첨 1
2	출원서 등 보정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첨 2
3	도면 등 보정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첨 3
4	기간연장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첨 4
5	우선심사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	별첨 5
6	출원인 변경 신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첨 6
7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첨 7
8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첨 8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별첨 9
10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별첨 10
11	연차등록료(상표 제외)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별첨 11

[별첨 1] 명세서 등 보정서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등 보완 명세서 등 보정 임시명세서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이의신청서 등 보정

정정명세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제출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10-2004-00012345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충)할 서류】 특허증원서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청구항 5

【보정(보충)방법】 추가

【보정(보충)내용】

제항에 있어서 51이 티오닝에팅, 52는 피파마인, 53은 치환된 페닝인 학습을

(【기타사항】 재심사청구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충원 또는 서명

【수수료】 (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14,000 원

(【재심사청구료】 원)

【합계】 14,000 원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 적용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2] 출원서 등 보정서

①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보정(보완)서

【보정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증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 제출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 제출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냄새건본의 제출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

【제출처】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40-2004-0012345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비류

【지정상품】 양국에약약선업, 학원경영업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비류

【지정상품】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그 밖의 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충원 또는 서명



【수수료】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14,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 참조)

[별첨 3] 도면 등 보정서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출원서 보완

【제출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중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30-2004-0012345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도면 //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정정 도면 //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중원 또는 서명

【수수료】 (기재방법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14,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12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4] 기간연장 신청서

① 지식재산처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 【신청구분】 ■ 법정(지정)기간연장 지정기간 단축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디자인 비밀기간 단축
 기간경과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제출인】

【성명(명칭)】 김중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충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

(【제출할 서류】) 보정서

(【접수(발송)번호】) 1-5-2004-000123-45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충원인의 사정에 의함

또는 별지와 같음(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연장신청서 제출 횟수】) 1회

【연장(비밀기간 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1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중원  또는 서명

【수수료】 20,000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별첨 5] 우선심사 신청서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서

【구 분】 □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설명(명칭)】 **김종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 출원인 □ 국제출원인 □ 제3자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업무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10-2016-0001234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자전거용 표시램프**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인)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기재 유험 제6호 참조)

(【수수로 자동나부버호】)

(【우선식사시첨료】 300,000 원) ➔ 식용시야드로 충분이겠으나 100,000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별첨 6] 출원인 변경 신고



특허 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구 분】 ■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병정후 출원인(양수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자동차안테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4-123456-1

【변경후】

【성명(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변경원인】) 전부양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충원 () 또는 서명
홍길동 () 또는 서명

(【수수료】) 13,000 원 상속 및 범인의 분할 학병의 경우는 6,500원

【첨부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양도증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 양도증 작성의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함

【양도일자】 2004.07.01

【양도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60101-123456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양수인】

【성명】 김술원



(【주민등록번호】) 690102-1345678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00번지

2. 출원인변경 관련 구비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① 양도 - 양도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등록한 인감날인]. 출원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
- ② 증여, 상속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③ 법인 분할·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 ④ PCT 국제단계에서의 명의변경을 기초로 한 출원인변경 - 기록변경통지서

(2) 동의서

- 출원인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른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별첨 7]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인감·전화번호 등(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 분】 ■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특허고객번호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김중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업무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주소

【변경(경정, 정정)전】 대전광역시 서구 등산동 920번지

【변경(경정, 정정)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변경(경정, 정정)원인】 이사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충원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별첨 8]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특허(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권리】 ■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종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라. 참조)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충경동**

【특허고객번호】 **4-2004-123456-1**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기재요령 제4호 마.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또는 법인 등)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10-0123456-00-00**

(【권리의 표시】)

(【상품류, 서비스업류(디자인대상 물품)】)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디자인 일련번호)】)

【등록원인】 **전부양도**

(【특약】)

(【가등록 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김충원	(대리인)	 또는 서명
등록의무자 홍길동	(대리인)	 또는 서명
(대위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④ 병경된 등록권리자로 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만 작성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수령인】)

【납부금액】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등록료】	40,000 원
(【등록세】)	21,600 원
(【인지세】)	20,000 원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합계】	91,600 원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별첨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상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전액납부)

[별지 제23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1234-5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또는 법인 등)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임음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번호】 40-0123456-00-00

【갱신등록 제외 대상】 갱신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분류구분】 KR(NICE)

【상품류】

【지정상품(업무)】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충원



또는 서명

【등록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분할납부 전액납부

【갱신등록료】 4개류 300,000 원

(【지정상품 가산금】 개상품 원) 갱신하려는 각 품목의 지정상품 수가 10개 초과 시
초과상품개수와 가산금액 기재(초과 지정상품
마다 2,000원)

【등록면허세】 9,20 원

【합계】 309,2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서류명】)

(【출원번호(심판번호)】)

[별첨 10]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❶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신청 구분】 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 발급

【제출인】

【성명(명칭)】 김종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충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또는 법인 등)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10-0123456-00-00

【신청대상】 특허(등록)증 발급인 경우 해당없음

【신청부수】 1부

(【대표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의 명칭】)

(【신청이유】) 본심

(【수취방법】) 우편

(【수령인】) 김종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종원 또는 서명

【수수료】 전자문서 5,000원, 서면 6,500 원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합니다)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11] 연차등록료(상표 제외) 납부서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납 부 서

<p>【납부구분】 <input type="checkbox"/> 설정 등록료 <input type="checkbox"/> 조속기 [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input type="checkbox"/> 지정상품·업무 추가 등록료</p> <p>■ 연차 등록료 <input type="checkbox"/> 등록료 보전</p> <p>【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 동 쪽 (특허고객번호) 4-2016-123456-7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번】)</p> <p>【납부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 동 쪽 (【특허고객번호(또는 대리인번호)】) 4-2016-123456-7 (【주소】) (【전화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10-1234567-00-00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 4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디자인의 일련번호】) (【포기대상】) (【납부연자(납부회차)】) 0년차 (【감면사유】)</p> <p>(【특약】) 【특허(등록)료】 252,000 원 (【등록면허세】)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p> <p>【특허(등록)증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문서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대전)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서울)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특허(등록)증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서울 송달함)</p> <p>(【성명】) (【전자우편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p> <p>【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정신청】 <input type="checkbox"/>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경수번호를 기재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p>	<p>【연차등록료 【회복신청】의 경우, 반드시 기재】</p> <p>【민법상 '채권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대리인과는 다름)</p> <p>【연차등록료 감면 대상자만 사유 기재】</p> <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산정기준 상이】</p> <p>【'수수료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계좌번호 기재】</p> <p>【등록료 보전의 경우에만 기재】</p> <p>【연차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여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p> <p>【회복신청 원인】 <input type="checkbox"/>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p> <p>【회복신청 원인】 <input type="checkbox"/> 전자문서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대전)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서울)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회복신청 원인】)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input type="checkbox"/> 방문수령(서울 송달함)</p> <p>【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경수번호를 기재】</p>	
납부자 (대위신청인)	김 동 쪽 (대리인)	(서명 또는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기재요경 제3호 참조		



2

불 임

지식재산처 지원 기관 현황

구 분	주요업무	주소 및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신재산 금융·사업화 • 특허기술거래평가 • 지역IP지원 • 국내발명 전시/행사 • 국제발명 전시/행사 • 학생 교원 전시/행사 • 미래형 발명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발명진흥회) • ☎ 02) 3459-2800 • FAX 02) 3459-2999 • 홈페이지 : www.kipa.org
한국특허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정보 활용촉진 • 지식재산정보산업 육성/지원 • 특허행정 정보화 및 업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본원]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서울지원]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 02) 6915-1400 • FAX 02) 6915-1409 • 홈페이지 : www.kipi.or.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R&D 전략지원 • 정부 R&D 전략지원 • 사업확산 전략지원 • 특허심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본원]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분원]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우신빌딩 8, 9층 • ☎ 02) 3287-4250(경영관리), 02) 3287-4350(사업정보) • FAX 02) 3287-4349 • 홈페이지 : www.kist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02) 2189-2600 • FAX 02) 2189-2698 • 홈페이지 : www.kiip.re.kr

구 분	주요업무	주소 및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 • 국내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 K-브랜드 보호지원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 영업비밀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 02) 2183-5800 • FAX 02) 2183-5899 • 홈페이지 : www.koipa.re.kr
한국여성발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명창의교실 • 생활발명코리아 • 여성발명왕EXPO • 여성발명·기업인 사업화지원 • 발명정보 웹진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 02) 538-2710 • FAX 02) 538-2714 • 홈페이지 : www.inventor.or.kr





3

불 임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센 터 명	운영기관	주 소	전 화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경제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13층	02) 2222-3860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1층	031) 500-304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6층	032) 810-2882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종합지원센터 1층	031) 539-5031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1층	031) 244-8321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032) 716-6487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협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505호	033) 749-3395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보듬관 403호	033) 264-6580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횡지로 188-1 태백상공회의소 3층	033) 552-5555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강릉상공회의소5층	033) 643-4413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043) 229-2731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충주시 유품로 31 충주상공회의소 5층	043) 843-7005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36길 63, 충남지식산업센터 2층(203~204호)	041) 559-5746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서산상공회의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4층	041) 663-0041
세종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정로 93 세종SB플러스 402호	044) 998-1000
대전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1007호	042) 932-0420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33 포항상공회의소 2층	054) 274-5533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구미상공회의소 2층	054) 454-6613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054) 859-3093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2층	055) 210-3081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진주상공회의소 3층	055) 762-9411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5층	053) 222-3082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3층(305호)	051) 714-6761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2층	052) 228-3082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 TP 벤처지원동 105호	063) 252-9301
전남지식재산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4층	061) 242-8587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	062) 954-3841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벤처마루 10층(1003호)	064) 755-2554



4

불임

주요 국가 지식재산관청 인터넷 주소

국 가	주 소
그리스	http://www.obi.gr
남아프리카공화국	http://www.cipc.co.za
뉴질랜드	http://www.iponz.govt.nz
덴마크	http://www.dkpto.dk
대 만	http://www.tipo.gov.tw
독 일	http://www.dpma.de
러시아	http://www.fips.ru
말레이시아	http://www.myipo.gov.my
모나코	http://www.en.gouv.mc
몽 골	http://www.ipom.mn
미 국	http://www.uspto.gov
벨기에	http://www.boip.int/en
브라질	http://www.gov.br/inpi/en
스웨덴	http://www.prv.se
스페인	http://www.oepm.es
스위스	http://www.ige.ch
싱가포르	http://www.ipos.gov.sg
걸프협력기구	http://www.gccpo.org
아일랜드	http://www.enterprise.gov.ie/en
영 국	http://www.gov.uk
유라시아	http://www.eapo.org
이탈리아	http://www.uibm.mise.gov.it
일 본	http://www.jpo.go.jp
중 국	http://www.english.cnipa.gov.cn



5

불임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기관(국가)	검색구분	주 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검색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국제상표검색	http://www.wipo.int/romarin
	국제디자인검색	https://designdb.wipo.int/designdb/en/index.jsp
미 국 (USPTO)	특허검색	http://patft.uspto.gov/
	상표검색	https://www.uspto.gov/trademark
유럽 (EPO)	특허검색	http://www.espacenet.com/index.en.htm
일 본 (IPDL)	특허/상표/ 디자인 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
유럽지식재산청 (EUIPO)	상표검색	https://www.tmdn.org/tmview
	디자인검색	https://www.tmdn.org/tmdsview-web/#/dsview
호주 (AU)	특허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au/ols/auspat/
	상표검색	https://search.ipaustralia.gov.au/trademarks/search
	디자인검색	https://search.ipaustralia.gov.au/designs/search/quick
캐나다 (CA)	특허검색	http://ic.gc.ca/opic-cipo/cpd/eng/introduction.html
	상표/디자인검색	http://www.ic.gc.ca/
중국	특허검색	http://211.157.104.77:8080/sipo_EN/search/tabSearch.do?method=int
	상표검색	http://wsjs.saic.gov.cn
	디자인검색	https://pss-system.cponline.cnipa.gov.cn/conventionalSearch
영국	특허/상표/ 디자인 검색	http://www.ipo.gov.uk/search
홍콩	특허검색	http://ipsearch.ipd.gov.hk/patent/main.jsp?LANG=en
	상표검색	http://ipsearch.ipd.gov.hk/trademark/jsp/main.jsp

기관(국가)	검색구분	주 소
독일 (DE)	특허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pat/uebersicht
	상표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marke/uebersicht
	디자인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gsm/basis
뉴질랜드	특허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5025624841
	상표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4944036841
	디자인검색	https://app.iponz.govt.nz/app/Extra/IP/DS/Qbe.aspx?sid=638657439365973250&op=EXTRA_ds_qbe&fcoOp=EXTRA_Default&directAccess=true
필리핀	특허검색	http://121.58.254.45/ipophilsearch/patentsearch.aspx
	상표검색	http://www.wipo.int/branddb/ph/en/
	디자인검색	https://wipopublish.ipophil.gov.ph/wopublish-search/public/designs;jsessionid=AF556AF72473315EA2DE30029A0AA138?0
러시아	특허/상표/ 디자인 검색	http://www.rupto.ru/rupto/portal/96bb3146-3081-11e1-351c-9c8e9921fb2c?lang=en
덴마크	특허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Patent
	상표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Varemaerke
Thomson Reuters	MicroPatent	http://www.micropat.com/static/index.htm



6

불 임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기 관	주 소
지식재산처	http://www.moip.go.kr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kista.re.kr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http://www.kaips.or.kr
국제지재권 분쟁정보포털	http://www.ip-navi.or.kr
영업비밀 보호센터	http://www.tradesecret.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http://www.pcc.or.kr
표준특허센터	http://www.epcenter.or.kr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http://www.pipc.or.kr
한국여성발명협회	http://www.inventor.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특허정보 활용서비스	http://plus.kipris.or.kr
지식재산능력시험	http://www.ipat.or.kr
직무발명제도	http://www.kipa.org/ip-job/index.jsp
디자인 맵	http://www.designmap.or.kr
IP-Market(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http://www.ipmarket.or.kr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D2B 디자인페어	http://www.d2bfair.or.kr
IP 캠퍼스	http://www.ipcampus.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한국반도체산업협회	http://www.ksia.or.kr
반도체설계재산유동센터	http://www.kipex.or.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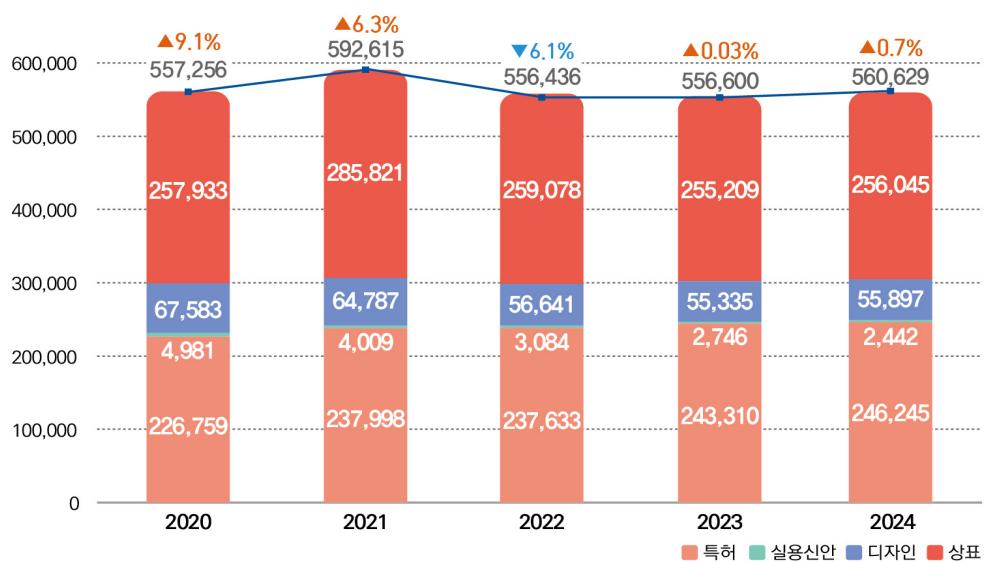
불임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1. 출 원

①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건)



②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24)

(단위: 건)

국 가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한국(KR)	195,794	2,020	50,363	227,290	475,467
미국(US)	15,575	26	1,140	5,947	22,688
일본(JP)	13,861	20	747	2,827	17,455
중국(CN)	5,653	241	1,729	8,925	16,548
독일(DE)	3,650	7	187	1,302	5,146
기 타	11,712	128	1,731	9,754	23,325

※ 국제특허, 상표, 디자인(지정관청, 지정국 기준) 출원건수 포함

③ PCT 국제출원 현황

가. 수리관청

(단위: 건)

구 분	국 어	영 어	일 본
2020년	16,919	2,756	0
2021년	18,756	1,772	0
2022년	20,160	1,755	1
2023년	20,407	1,759	0
2024년	21,967	1,67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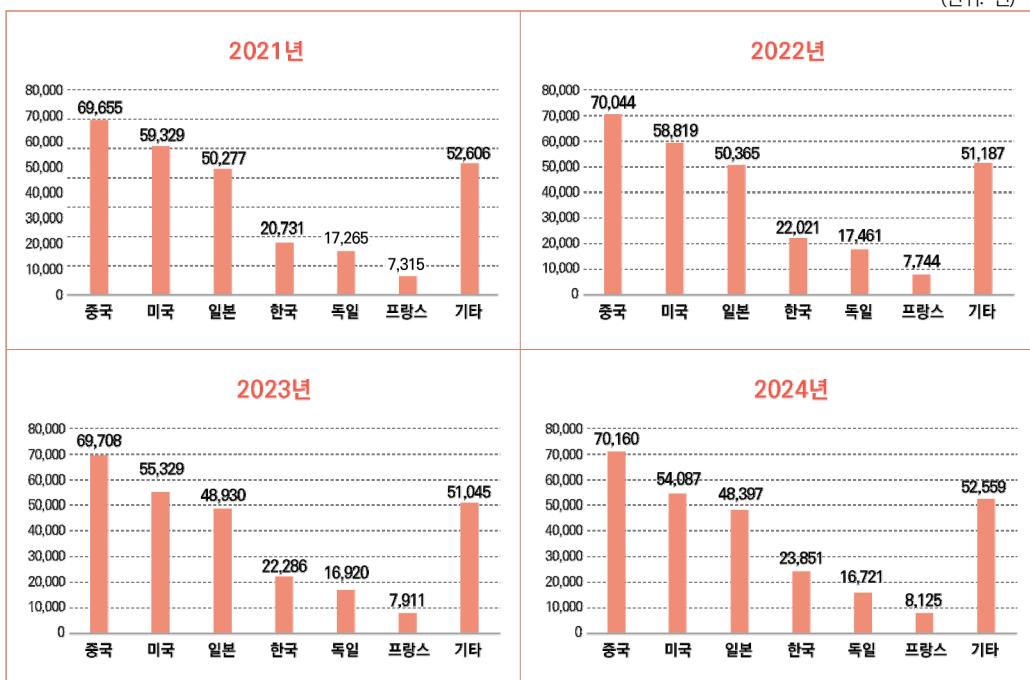
나. 지정관청

(단위: 건)

구 分	특 허	실용신안	계
2020년	38,078	81	38,159
2021년	43,419	82	43,501
2022년	46,478	67	46,545
2023년	45,484	64	45,548
2024년	43,545	95	43,640

④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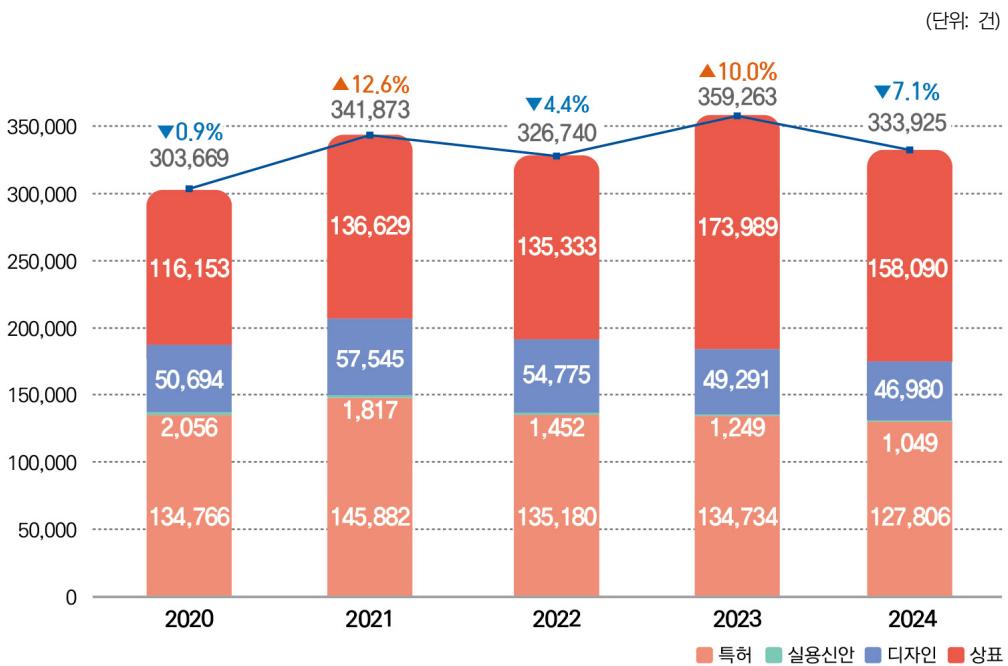
(단위: 건)



※ 출처 :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2024.5월 기준)

2. 등록

① 권리별 등록현황



② 권리자 국적별 등록현황('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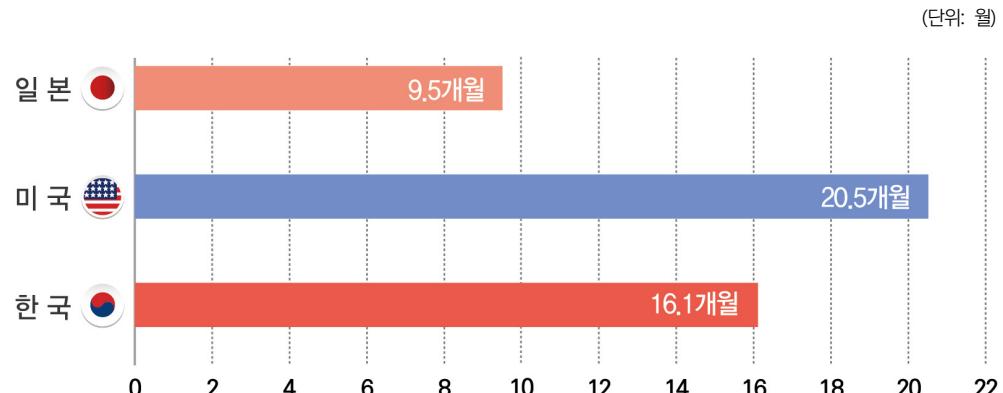
국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한국(KR)	95,165	895	39,893	135,025	270,978
미국(US)	9,641	10	1,823	5,585	17,059
일본(JP)	9,741	9	852	2,374	12,976
중국(CN)	3,385	78	1,473	5,708	10,644
독일(DE)	2,579	6	538	1,315	4,438
기타	7,295	51	2,401	8,083	17,830

3. 심사

① 연도별 특허 심사청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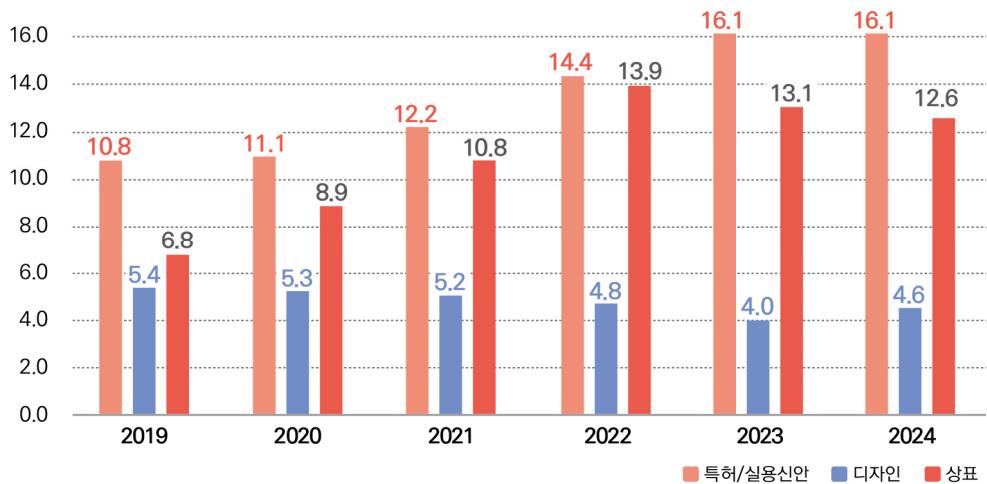
출원연도 및 출원건수	심사청구연도 및 심사청구건수								출원연도별 심사청구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7년 204,775	127,442 (62.2%)	5,084 (2.5%)	5,279 (2.6%)	29,193 (14.3%)	6,011 (2.9%)	1,504 (0.7%)			174,513 (85.2%)
2018년 209,992		129,951 (61.9%)	5,688 (2.7%)	10,721 (5.1%)	32,615 (15.5%)	1,182 (0.6%)			180,157 (85.8%)
2019년 218,975			133,263 (60.9%)	16,150 (7.4%)	12,037 (5.5%)	25,783 (11.8%)			187,233 (85.5%)
2020년 226,759				140,508 (62.0%)	16,393 (7.2%)	12,542 (5.5%)	26,528 (11.7%)		195,971 (86.4%)
2021년 237,998					147,536 (62.0%)	17,448 (7.3%)	12,565 (5.3%)	26,629 (11.2%)	204,178 (85.8%)
2022년 237,636						144,049 (60.6%)	18,036 (7.6%)	12,709 (5.3%)	174,794 (73.6%)
2023년 243,310							142,850 (58.7%)	18,063 (7.4%)	160,913 (66.1%)
2024년 246,245								141,983 (57.7%)	141,983 (57.7%)

② 주요국 특허·실용실안 심사 처리기간('23)



③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단위: 월)



4. 심판

① 심판청구 현황

2022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합 계
특 허	1,847	674	2,521
실용신안	30	25	55
디 자 인	42	302	344
상 표	749	2,763	3,512
소 계	2,668	3,764	6,432

2023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합 계
특 허	2,011	1,106	3,117
실용신안	24	25	49
디 자 인	42	274	316
상 표	1,073	2,822	3,895
소 계	3,150	4,227	7,377

2024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합 계	
특 허	1,665	626	3,117	
실용신안	15	18	49	
디 자 인	137	297	316	
상 표	1.197	2,888	3,895	
소 계	3,014	3,829	6,843	

② 심판처리 현황

2022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기 타	합 계
특 허	2,253	734	71	3,058
실용신안	37	22	2	61
디 자 인	80	330	13	423
상 표	815	2,306	109	3,230
소 계	3,185	3,392	195	6,772

2023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기 타	합 계
특 허	1,936	678	66	2,680
실용신안	28	29	1	58
디 자 인	31	342	9	382
상 표	861	3,006	138	4,005
소 계	2,856	4,055	214	7,125

2024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기 타	합 계
특 허	1,824	1,064	50	2,938
실용신안	19	21	1	41
디 자 인	54	314	45	413
상 표	742	2,313	104	3,159
소 계	2,639	3,712	200	6,551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발행일 | 2026년 1월

발행인 | 지식재산처장 김 용 선

발행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www.moip.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 481-5142

FAX. (042) 472-3467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